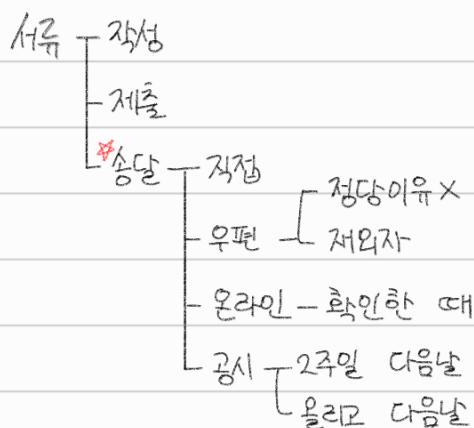


# Part 1. 절차총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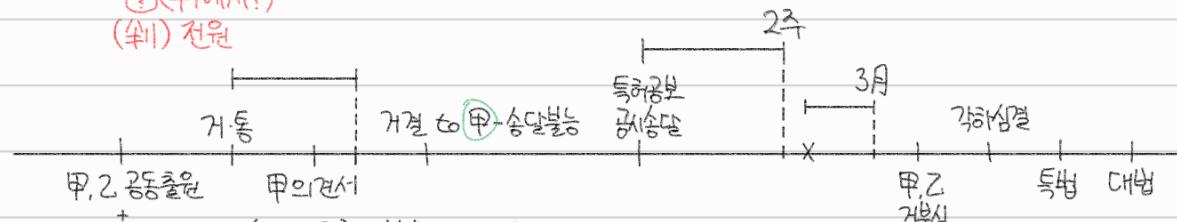
허: 특법  
후, 다: 대법

연도  
2003 후 182

거절결정(특)

219 ① 송달할 수 없는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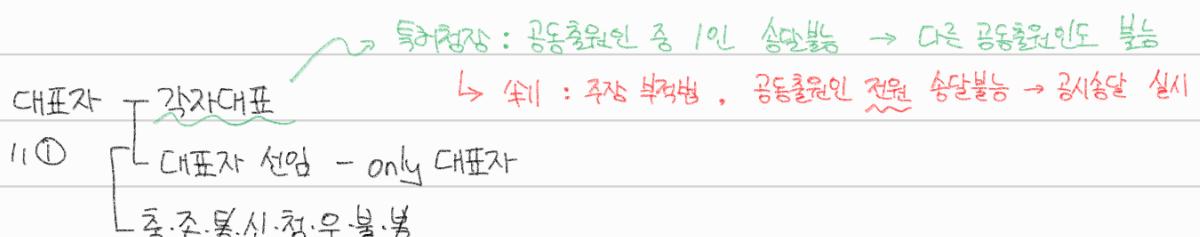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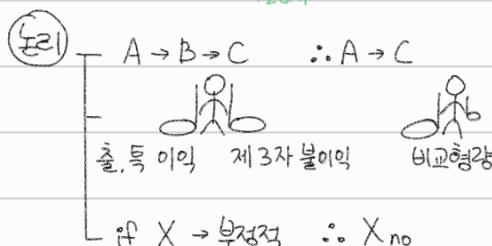
② (누구에게?)  
(判) 전원



심사청구 (미국거주) + 남산  
甲,乙측 - 억울하다, 남산  
특허청장측 - ①, (승인여부)  
경관계

특허청장: 원래 반려 사유였다 주장

判: 반려하지 않고 절차 진행, 이후 절차상 하자 주장 不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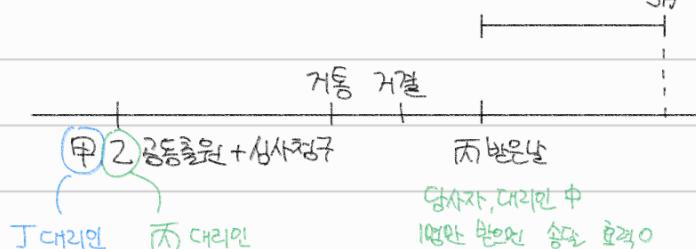
2008 허 (647)

거절결정(특)

방식 反 X (∴ 11 ①)

반려X, 무효X

甲,乙 공동출원  
乙심사청구  
심사청구서 - 심사청구인 乙



part 1. 절차총칙 (조문)

part 2. 거절이유 (判)

part 3. 출원 + side 절차 (조문 + 判)

part 4. 심사·공개 (조문 + 判)

part 5. 특실질 (조문)

part 6. 배타권 침해실체 (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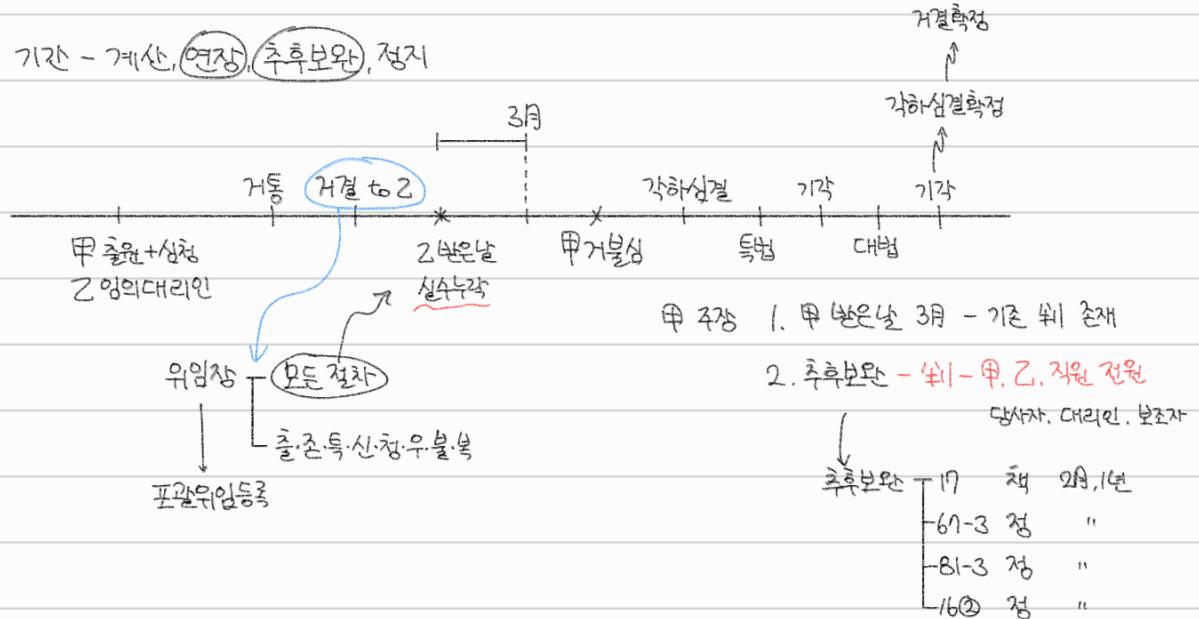
part 7. " 절차 (判)

part 8. pct (조문)

2019 허 4853

기간 - 계산, 연장, (추후보완), 정지

거절경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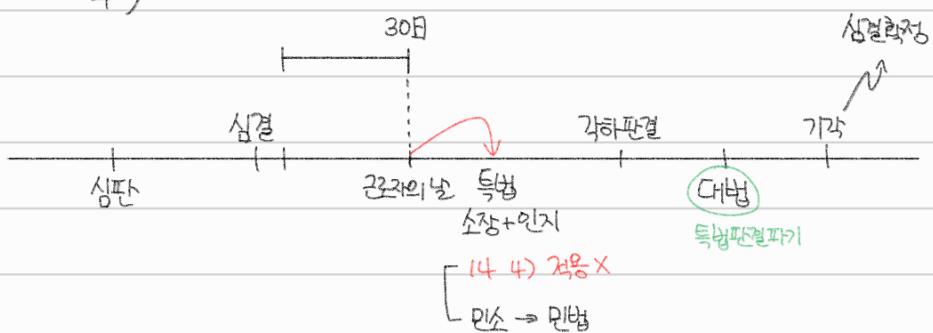


2013 후 1573

기간 - (계산), 연장, 추후보완, 정지

등록무효(실)

日 ) 14 4)  
月 ) (토) ~ (월)  
年 ) 근로자의 날



判: 14 4) '특허에 관한 절차'에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 포함X

2001 후 1044

취하·포기

거절 결정(특)

출원

특허권

청구항 별 취하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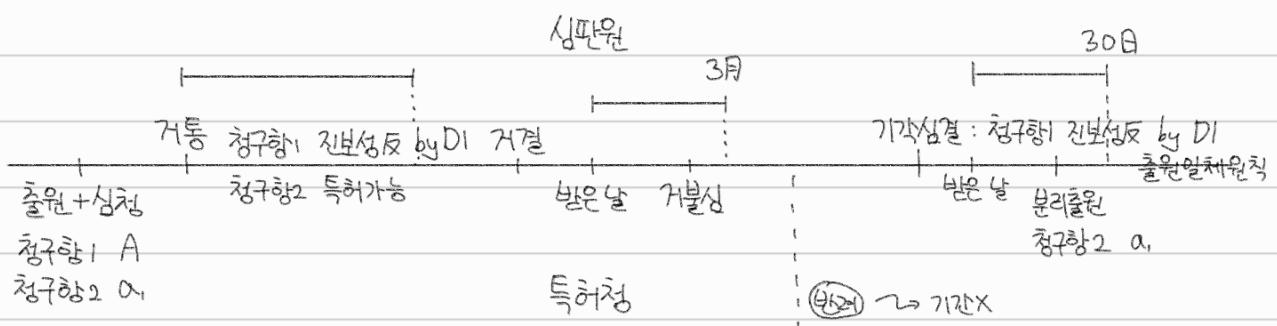
X

청구항 별 포기

only 등록료

아무때나

각색



취하  
- 절차증표 전 - 출원  
- 시기제한  
- 不可

判: 일부 취하 실질적 목적 보정 → 보정기간 경과 후 제출된 출원 취해서 반려

→ 결과적으로 정당

80년 414

무효, 반려

특허권 권리자

특허출원서

사구 11 ① 11) 절차 법률을 권리 X → 25, 33 ① 本, 44, 33 ① 但

재외자 권리능력

특허청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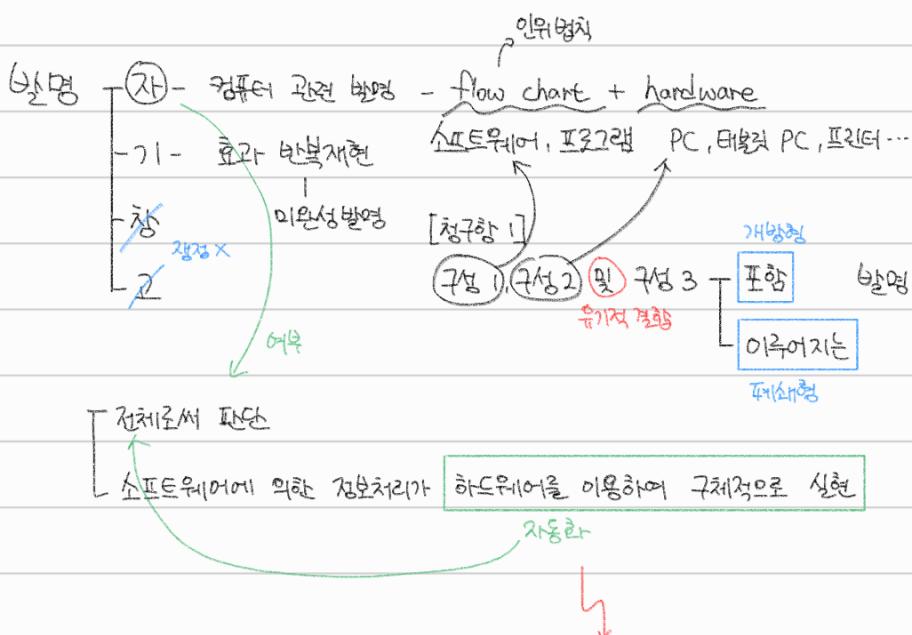
반려처분취소

判: ↳ 반려 X, 수리 → 심사

## Part 2.

### 거절이유

<p>21) → 29① 本 人 → 기재 → 성립성 → 산이 → 신·진·선·확 → 범위 → 오역 → 불특허 → 조약 33 ① 本 33 ① 本 44 25 33 ① 但</p> <p>위증서 특별권 0% 특별권 10% 흔자증원 재외자, 외국인, 비동양국 특허청, 심판원 직원</p>	<p>29② 29 ③-① 29 ① 本 29 ① 本 29 ① 각호 36 ①-③ 42 ④ 1), 2) 42 ④ 1), 2), ⑧, 45 민법상 명예 정당한 2 이상 기재명의</p>
--	--



2001 후 3149

거절결정(특)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발명 → 죄 : 하드웨어 이용 정도↓, 자동화 아니다.

특허법상 발명의 판단 기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자연법칙 이용여부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

2001 후 265

거절결정(특)

야 하는바,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짓이고, 또한 위 거절이유통지서에서 밝힌 거절이유와 특허거절결정 및 심결의 이유는 세부적인 표현내용에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된 취지에서 서로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그 심결의 이유가 원고에게 별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새로운 거절이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절이유

2019 허 943

거절결정(특)

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등 참조).

(71)

20① 反 → 29① 本



등록무효(특)

미완성 발명

vs

42③ Ⅰ)

발명자

통상의 기술자

효과반복재현 X

효과 반복재현 X - 명확이해, 용이재현 X

명세서  
(도, 기)

+ 출원시 기술상식

명세서 + 출원시 기술상식  
(도, 기)

발설  
(서금21)

- 발명

- 배경기술

- 과제

- 구성

- 효과

효과입증데이터  
실시예 - 생산예, 사용예

효과입증데이터

반복 실시

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을 가능성으로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미완성

- 미생물 - 출원시 용이입수 O X
- 기탁 기관 기탁 임의
- 의약용도

출원 전 → 출원 후 기탁 不可  
if not 미완성  
29① 本 + 42③ Ⅰ 反

특허청

(주) 출

(71) 출

46反 보정명령 → 기탁절차무효 → 출원거절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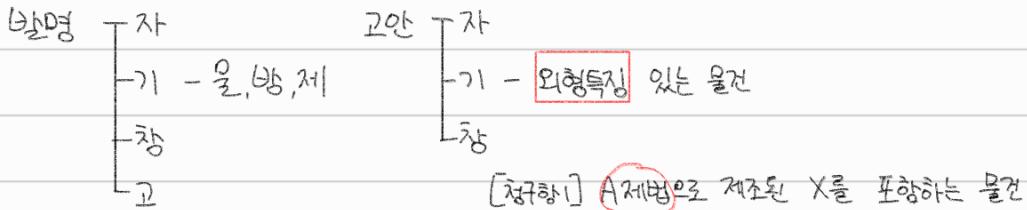
(41) 출원서  
명세서  
수탁번호

취지, 증명서류

국내소재지 예외

2004 후 2499

등록무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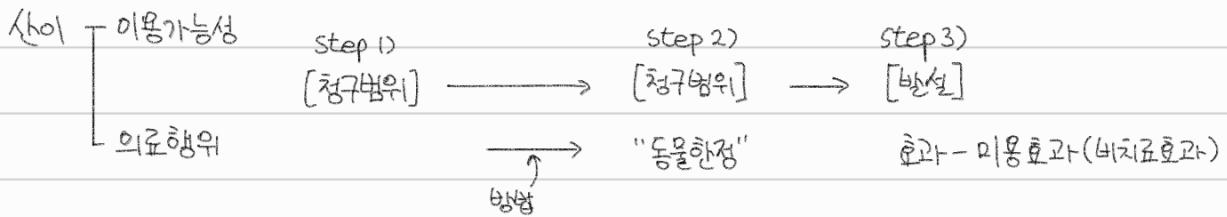


은 별론으로 하고,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제외하면 아무런 기술적 특징이 없어 이를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의 물건의 형상·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기술사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청구범위에 물건의 생산방법을 구성요소의 일부로 기재하고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 곧바로 실용신안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청구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90 후 250

거절결정(특)

방법발명  
(동물한정)



동물용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히 청구항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동물용 의약  
현재는 특허의

2003 후 6104

거절결정(특)

방법발명  
(미용행위)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 즉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이러한 모발의 웨이브방법에 관한 발명은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의료행위가 아니라 미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발명을 실행할 때 반드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모발의 웨이브방법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속한다 할 것이다.

2018 후 3062

거절결정(특)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 즉 의료행위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참조),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직접적 치료방법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예비적 치치방법,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치방법, 인체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예방방법 및 간호방법도 포함된다(대법

인체를 치치하는 방법이 치료효과와 미용효과 등의 비치료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으면 그러한 방법은 치료방법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건강증진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치료적인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효과인 경우에는,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1 후 2801

[청구항 1] X 세포를 포함하는 A 질병 치료용 조성물

거절결정(특)

[발설] 사람 비장 추출

~~출원 후~~ ~~는~~ 돼지 ...  
↓

출원 후 기술발전 보완 X

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할 것인바, 원

신규성

1. 29 ① 각호자위 특정 - A+B

↳ 출원 전 공지·공연실시·반간계·정보  
↳ 우선권 주장일 당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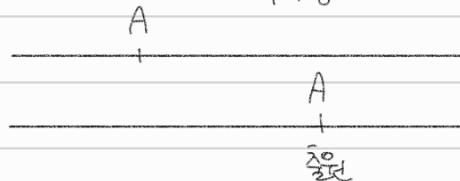
↳ 불특정 다수인(발명내용) 인식 OK  
= 비밀유지의무 無

2. 청구항 특정 -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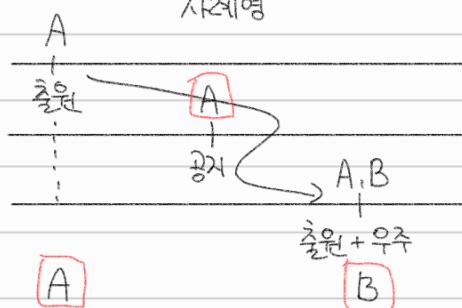
3. 대비	구성	청	D1	대비
	1	A	A	동
	2	B	B	동
4. 동일성 판단	3	C	-	차

C 있는거나 마찬가지(실질적 동일) - 신규성 X

공지·공연실시  
노하우(영업비밀) 주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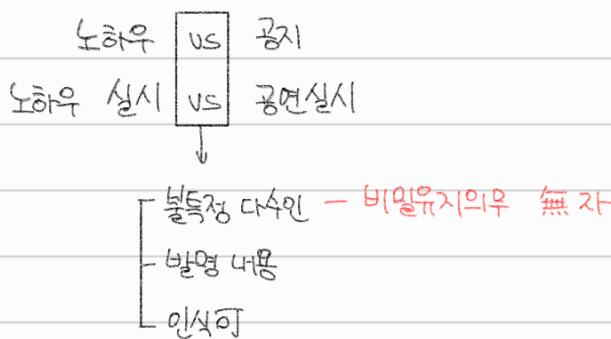


사례형



D <sub>1</sub> or 청	신규X	신규O 진보X	진보
문언동일	실질적동일	차이	특허차이

## 29 ① 각호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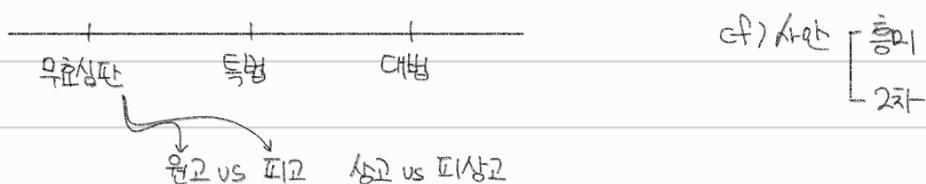


2005.8.2328

卷之三

공지 · 공연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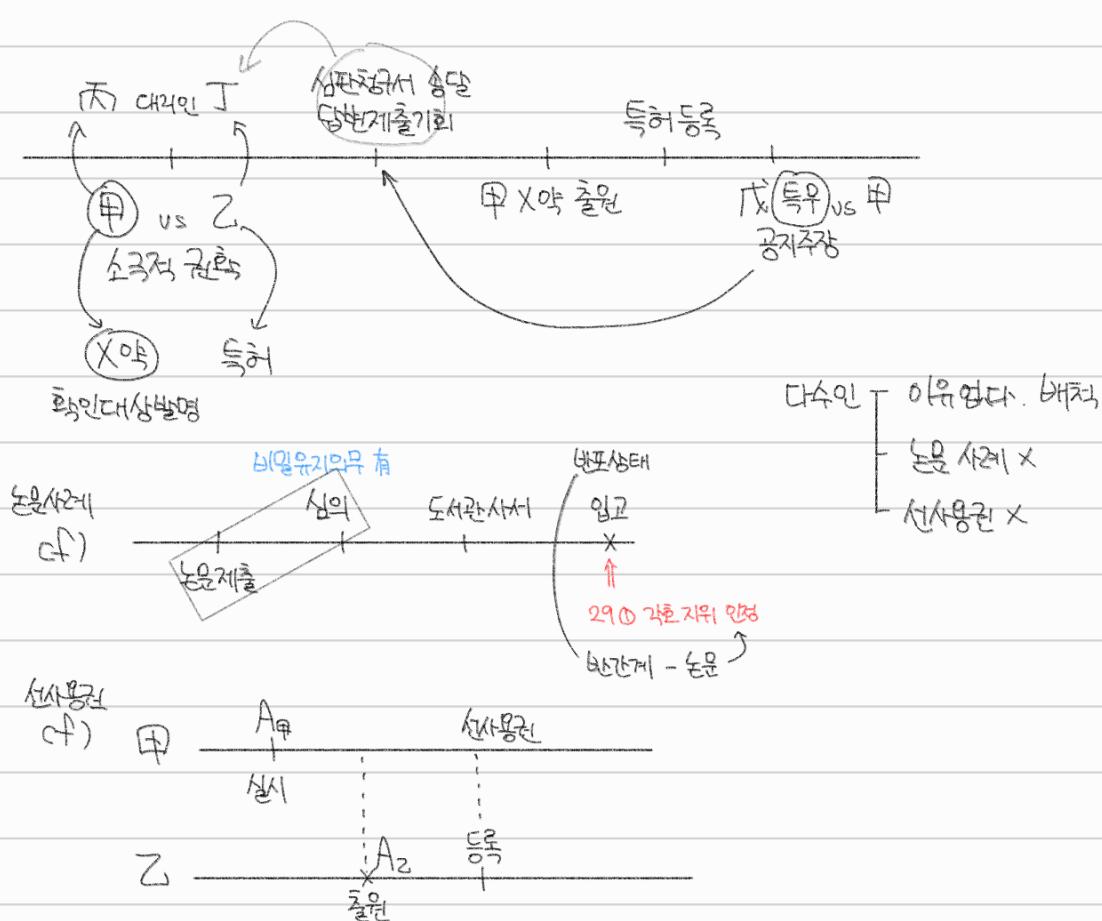
서 ‘공지된 발명’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발명을 말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1후64 판결,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참조),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참조), ‘불특정다수인’이라 함은 일반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발명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인원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013-0181B

卷之三

곡지·곡연실시



95 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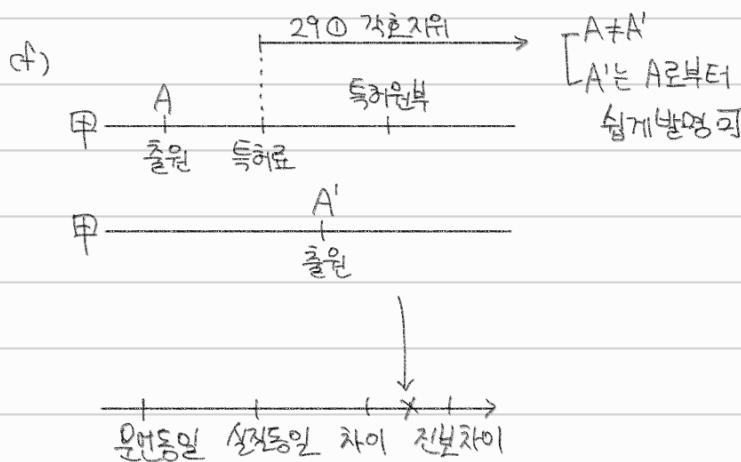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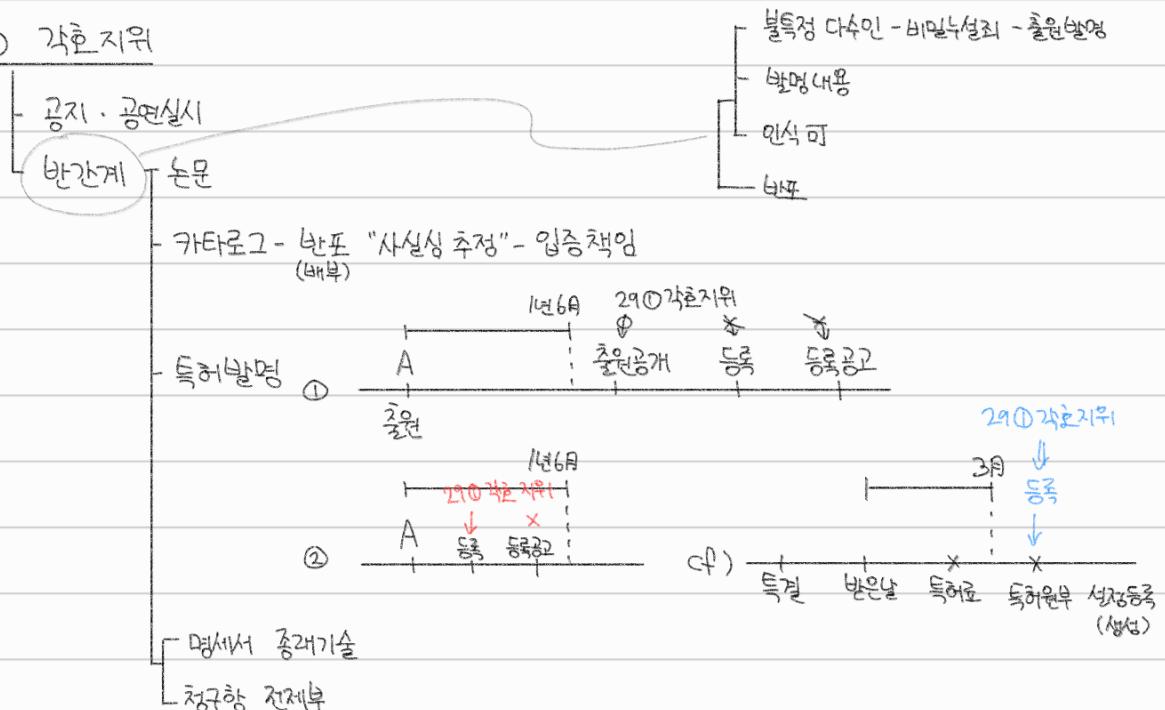
## 거절결정(특)

### (반포된) 간행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특허출원 이전에 출원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에 신규성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위 간행물에의 발표로 인하여 출원발명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 되어야 하고(성질상 간행물에의 발표로 인하여 출원발명이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며,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내용이 공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논문이 일단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주위의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29 ① 각호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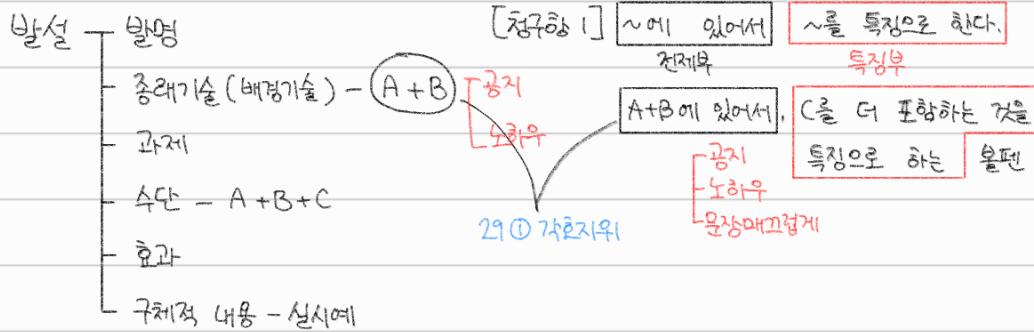
91년 1410  
등록번호(특)  
카타로그

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타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타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타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5.12.24. 선고 85후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인용발명이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본건 발명 출원전에 국내에 반입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갑제5호증(카타로그) 역시 본건 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되었다 볼 것이고 따라서 위

2009년 4월 2일  
등록번호(실)

태에 놓이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고안의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당해 고안의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실용신안제도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와는 달리 창작한 기술적 사상

등록공고 X      설정등록



Step 1) 종래기술, 전체부 기재사항만으로는 29 ① 각호 지워 X

Step 2) 출원인이 공지자인 → 사실상 공지 추정 → 29 ① 각호 지워 O / cf) 29 ① 각호지위 ⇒ 신규성·진보성

Step 3) 사실과 다른 경우 복멸 O → 입증책임자가 입장해야

29 ① 각호 지워 O

부정하는자가 입증책임  
심사관, 무효심판청구인

### 변론주의

cf) 판사 → 주장·입증책임 분배 → 주장 입증책임자 패소 → 자백, 입증책임 경감  
(자백간주, 의제자백)  
사실관계 수집 → 법 적용 → 결론

2013 후 37

등록무효(실)

전원합의체

그렇다면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체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없이도 전체부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변복될 수 있다.

2006 후 2660

정점(특)

A	"A는 2021.4.19 공개"	
+	×	
공지	2022.6.3	
⋮	신고기사	
A		
	2022.5.2	
	출원	

명'에서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발명 또는 기술이

최초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고, 한편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증거가 아니라도 정정거절이유를 보충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정정거절이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원이 그 증

간행물인 을 제3호증 외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후에 작성된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을 증거로 채용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 내제된 속성



분필  $\leftarrow$  X 방법으로 제조

공지

분필 - 10μm 이하 가루 응집

출원

## 신규성

## 선원

## 획선

vs

## 진보성

1. 29 ① 각호지위 (특정)

선원지위

획선지위

1. 29 ① 각호지위 특정 + 선택

2. 청구항 특정

"

"

2. "

3. 대비

"

"

3. "

4. 동일성 판단

"

"

4. 곤란성 판단

D1 vs 출원



문연동일

실질동일

차이

곤란차이

2003 후 4/7 2

• 발명 - (효과) - 구성

• D1 A+B 출 A+B+C

구성	청	D1	대비
1	A	A	동
2	B	B	동
3	C		차

$\alpha$  B효과  $\beta$  효과

D2  
B+C  
 $\beta$  효과

진보성  $\rightarrow$  2:1 비교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는

2004 허 5/16 0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1 대 1로 비교하여 선행발명에 그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하고 그 특허발명의 구성이 2개 이상의 선

2005 후 30/17

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항 발명은 방법의 측면에서, 비교대상발명 제1항은 장치의 측면에서 각각 포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카테고리의 차이에 따라 기술사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 발명의 효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양 발명은 그 카테고리의 차이(방법발명과 장치발명)에 불구하고 동일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

95 후 880

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 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

88 후 769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

2012 허 8928

상발명 1, 2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릇 종래기술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해결수단을 창작한 때에는 그 새로운 해결방법의 제공에 의한 기술의 풍부화가 인정되어 발명의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2224 판결, 대법원 2000. 12. 22.

2007-16034

선행기술문헌이 그 선행기술을 참작하지 않게끔 가르친다면, 즉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그 발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단념케 한다면 그 선행기술문헌이 특허발명과 매우 가깝게 닮았어도 담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단지 선행기술이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였다고 하

2009 후 3660

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  
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나 자료에 기하여 과학적 다음 이를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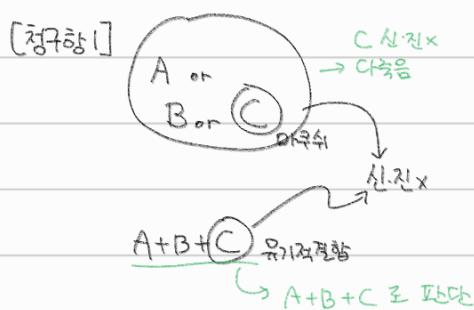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참조).

2003 후 15(2)

선고 2000후3234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국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국내에 있는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2005 થી 1844



이와는 달리 1개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중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실용신안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 중 일부에 관하여만 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0후1567 판결).

2008-4837

안과 작용효과가 다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작용효과가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실용신  
아의 구성을 통하여 그러한 작용효과가 충분히 의미 있는 정도로 달성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 신규성

1. 29 ① 각호 지위 + 특정

2. 청구항 특정

3. 대비

4. 동일성 판단

## 진보성

+ 선택

"

"

## 관련성 판단

예측不可 효과 구성관련성

효과현저성 - 이질, 양적현저

저해요인, 상업적 성공, 외국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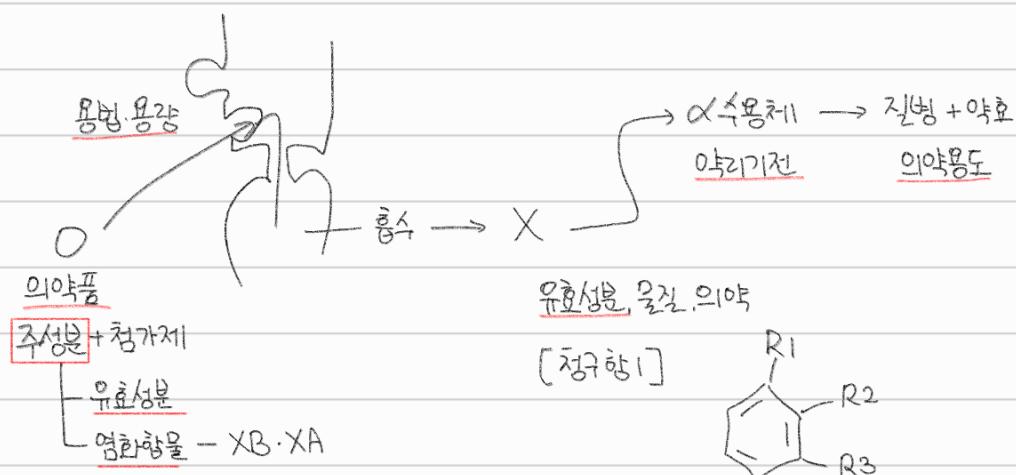
구성	청구항	주행		대비
		D1	D2	
1	A	A	동	
2	B	B	동	
3	C		차	

+D2 +D3 ...

cf) 기재 + 출원시 기술상식

기재X + 출원시 기술상식

기재O + 출원시 기술상식



유효성분  
[청구항1] X 포함하는  $\alpha$  질병  $\beta$  약효 용 조성을 → 의약용도 발명

의약용도

구성 1      구성 2

효과

[청구항1] 프레가발린 포함하는 통증치료용 조성을

D1 프레가발린  $\rightarrow$  α 수용체 저해

D2 α 수용체 저해  $\rightarrow$  통증치료

구성	청구항1	주행		대비
		D1	D2	
1	프	프	통	
2	통	α수	(치)	

$\alpha$   $\rightarrow$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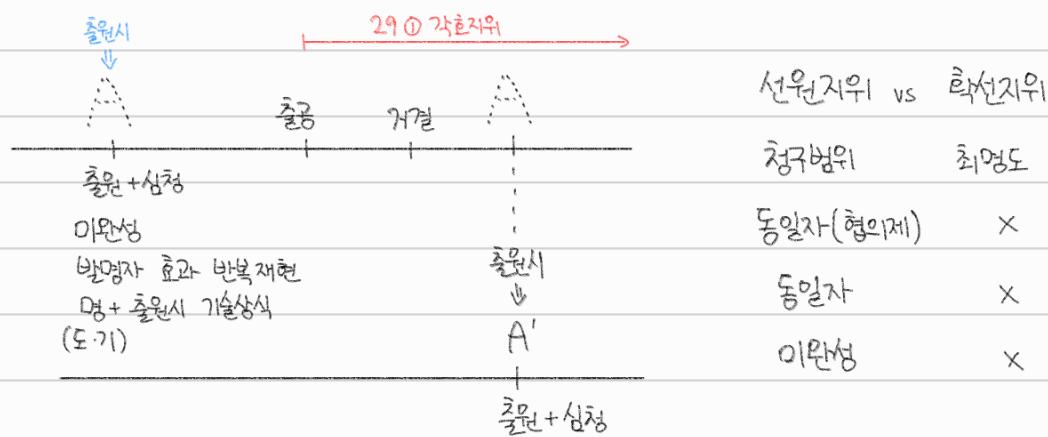
2013 후 2873

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그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일부 기재부분과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9 후 3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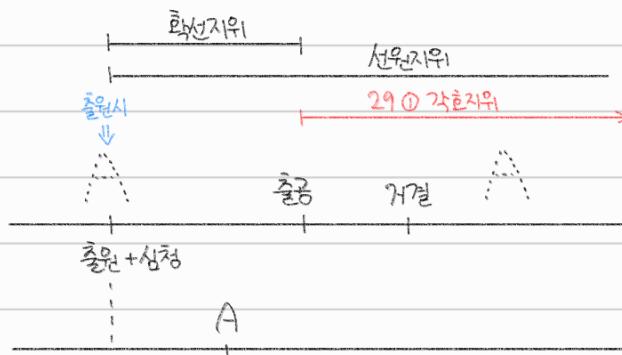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등 참조).

2006 후 1957



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

2011 허 1746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문제의 선출원 발명이 완성된 발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미완성발명은 위 규정에 의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미생물의 기탁번호, 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그 규정취지는 극히 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를 확인하여 발명의 완성을 담보하고 그 미생물을 재차 입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9.8.8. 선고

## 파라미터 발명

[청구항1]  $3 < \frac{b+c}{a} < 5$  인 조건 만족하는 조성을  
 수치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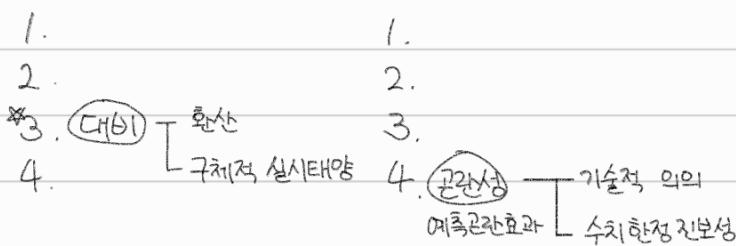
2017후 1298

42(3)()

- 발설 수립기 실시 가능하도록 기재
  - 생산 - 용이재현
  - 사용 - 효과 명확이해

[파라미터 발명 쉽게 실시 기재요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에도 일부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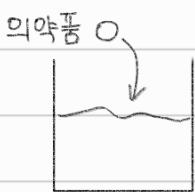


[파라미터 발명 신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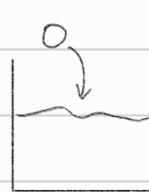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이른바 '파라미터 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건 또는 방법을 특정하고 있는 선행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선행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선행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반면, 위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하여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 DI

[청구항]



pH 1.2 용액  
1~3 시간



pH 6.5 용액  
20~30 분

†) 구성원성

효과현저성 - 이질, 양적현저

ex) DI A + B  
출 X + B 출 X + B + C

#### [파라미터 발명 진보성]

파라미터 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파라미터에 의해 한정된 구성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발명의 명세서 기재 및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로 인해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한편,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발명이 새롭게 도입한 파라미터를 수치로 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거나,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 참조).

반면,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그로 인해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파라미터와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 및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특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 · 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인용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 · 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 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 ·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D1

[청구항]

Case 1) A + B A + B + C + ... 정성적 ↗ 진보성 ↗ 수치한정+추가적구성 20% 80% 60-70% 1-5% 10-12% ↗ 구성근원성 ↗ 효과현저성

Ca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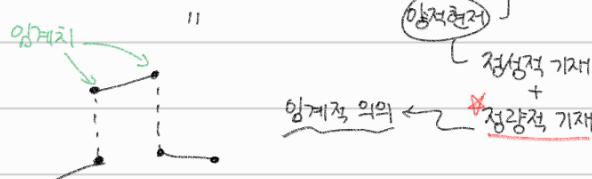
수치한정 → 이질

A + B + ... 이질 ] 60-7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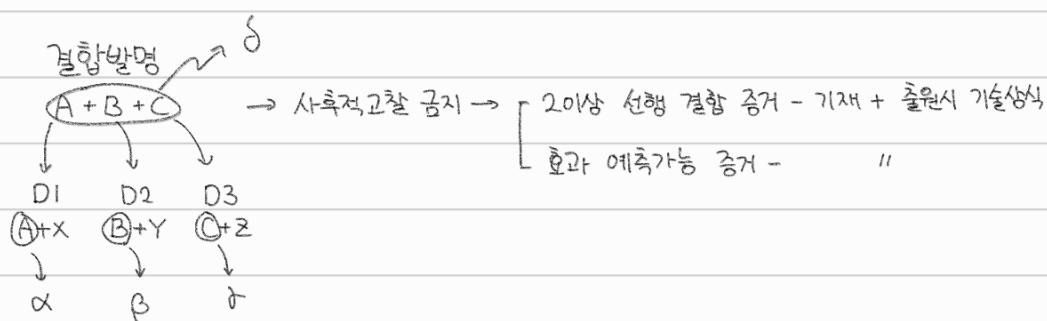
정성적 기재

Case 3)

수치한정 → 양적현저



2005 후 3284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에 있어,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참조)과 마찬가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선행발명의 효과 역시 명시적으로 기재된 효과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고려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221 판결).

2007 후 1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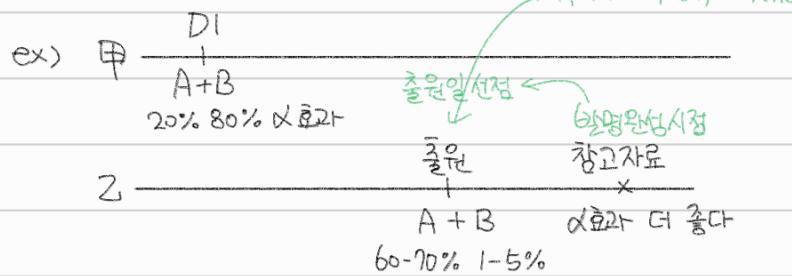
Cf) 효과기재 방법

정성적 기재

정량적 기재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 참조),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 대법원

2008 후 4998



표현한 경우에 있어, ①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 1299 판결 등 참조). 다만, ②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③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2011 후 2015

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그리고 한

재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내용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수치범위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수치한정이

## 의의

29 ① 각호 지위

출원

상위개념

하위개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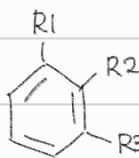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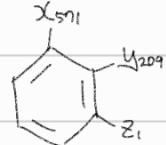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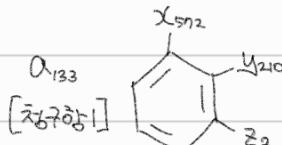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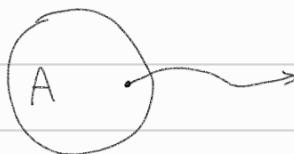
### [발설]

$\alpha_2$ 는 질병약로 있다.

### [실시예]

$\alpha_2$  제조예

$\alpha_2$  사용예



$$R_1 = X_1 \dots X_{1033}$$

$$R_2 = Y_1 \dots Y_{213}$$

$$R_3 = Z_1 \dots Z_{20}$$

"모두가" 진보  
 $\alpha_1, \beta_1$

효과 둘중 하나라도  
면어걸리면 신·진 인정

2008 후 3469

## 신규성

2010 후 3424

개시 or 개시 마찬가지

출원시 기술상식

2008 후 736

동일 or 실질적 동일

## 기보성

예측 불가 효과  $\begin{array}{l} \text{구성원리성 - ①, ②, ③} \\ \text{효과현저성 - 이질} \\ \text{양적현저 - 정성적 + 정량적} \end{array}$   $\begin{array}{l} \text{- 정성적} \\ \text{- 정성적} \\ \text{- 정성적 + 정량적} \end{array}$   $\begin{array}{l} \text{정량적 데이터 출원 후} \\ \text{참고자료로 제출可} \\ \text{(비교실험 데이터)} \end{array}$  "특허요건 엄격하다"

2006 후 6303

## cf) 선택발명

[발설]  $\alpha_{133}, \alpha_{132}$  [심장병 치료효과 더 좋다 - 정성적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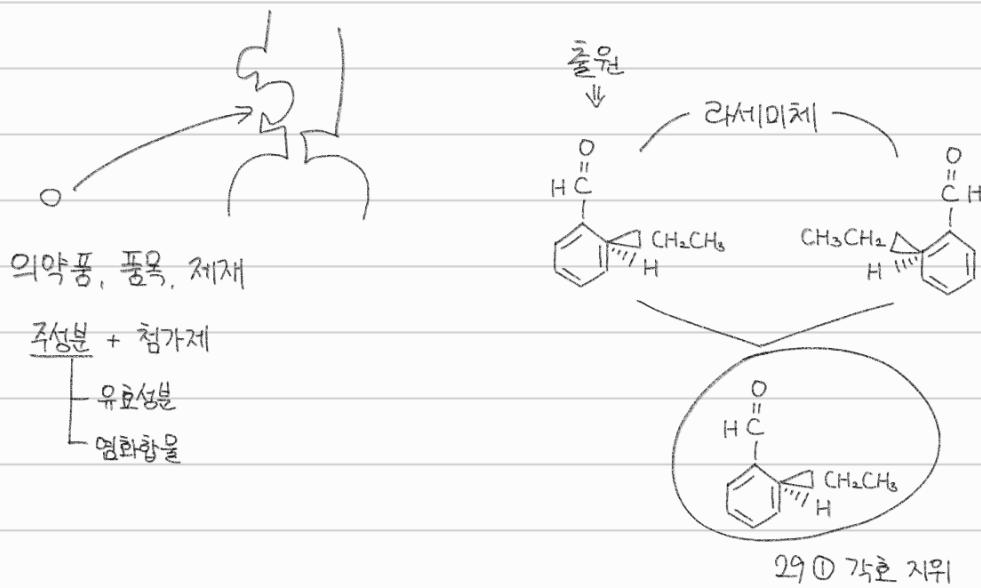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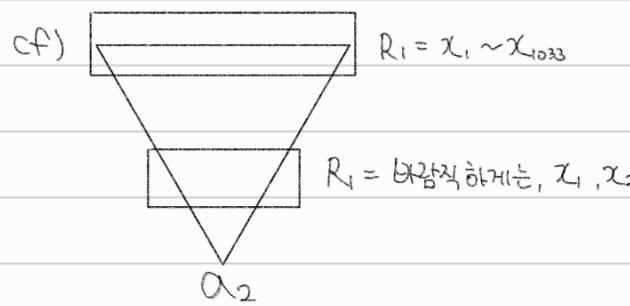
$\alpha_{133} - 100$   
 $\alpha_{132} - 99$  - 정량적 기재

→ 세포 동물 임상실험 데이터

나중  $\alpha_2-50$  vs  $\alpha_{133} 100$  - 비교실험 데이터

$\alpha_{132} 99$

2019 후 10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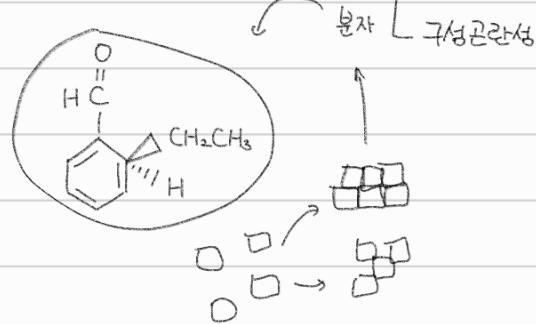
2002 후 1935

- 각세미체 - 효과현저성

- 수치한정 (case 2.3) - 효과현저성

2010 후 2872

- 결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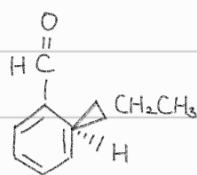


- 선택 - 효과현저성

구성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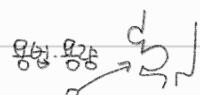
2018 후 10923

- 영화합물 - 효과현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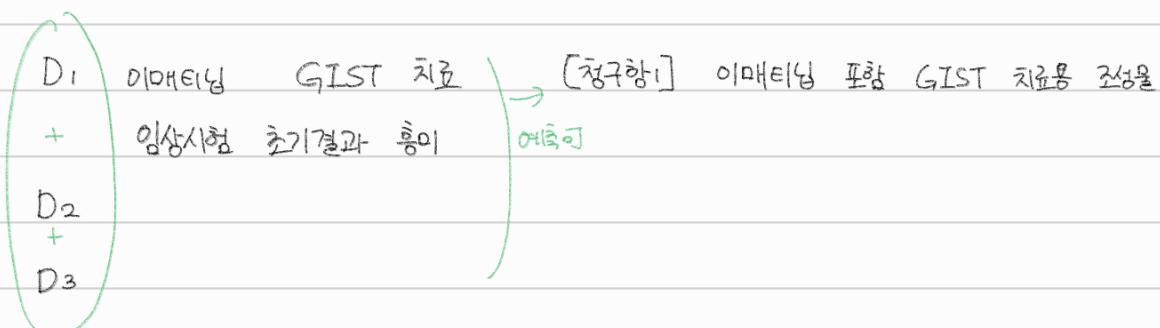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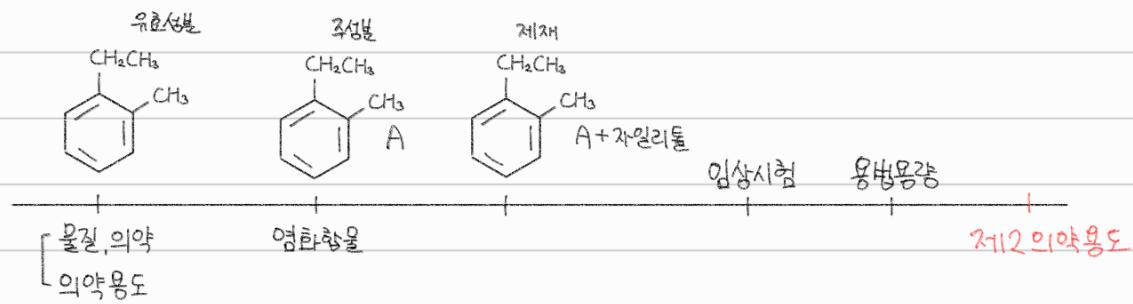


2014 후 2702

- 용법·용량 - 효과현저성



2016 후 502



## 프로그램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 구성  
 ↓  
 [청구항 1] flow chart + 하드웨어  
 구성 1      구성 2

발명  
 ↓  
 방법 - 방법

기록매체  
 장치

기록매체 저장된 프로그램(앱)

] 물건

1. 29① 각호지위

2. 청구항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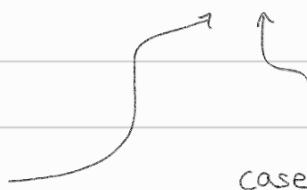
3. 대비

4. 동일성, 곤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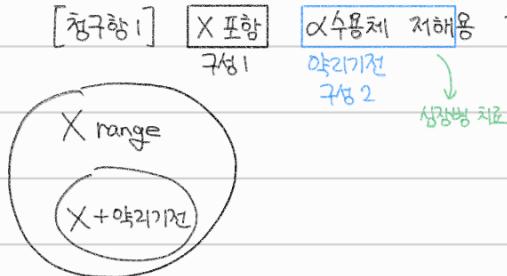
2012 후 3664

[청구항 1] X 포함 심장병 치료용 조성을 → 심장병 치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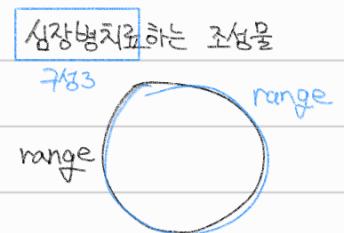
유효성분  
 구성 1      질병 약효  
 의약용도  
 구성 2



Ca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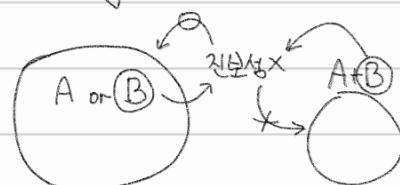
[청구항 1] X 포함  
 구성 1      구성 2  
 α수용체 저해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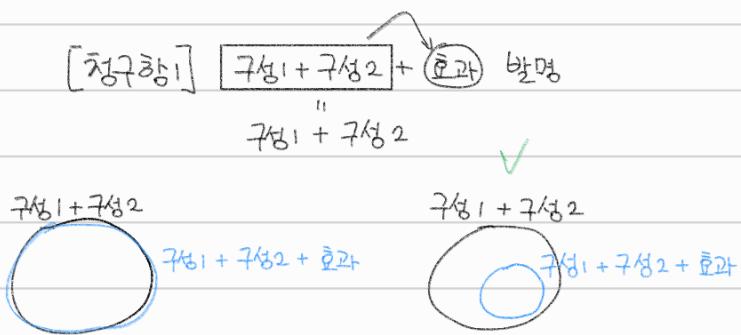
약리기전  
 Case 1) 구성인정여부  
 Case 2) 42④ 2) 명확여부

구성	청구항 1	D1	대비
1	X	X	동
3	심장병치료	심장병치료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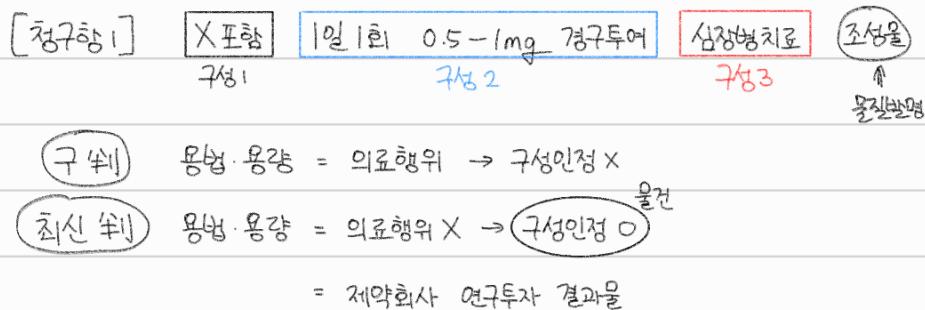
range



2001 후 2207



2014 후 768



2011 후 927

PBP

[청구항1]  $\alpha$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Product By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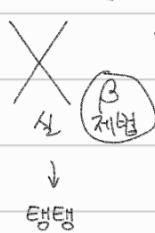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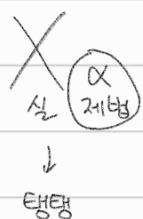
[물건] - structure - [기능  $\rightarrow$  기능식 청구항]  
 [방법] - acts  $\rightarrow$  PBP 청구항

구) 特殊의사경  $\xrightarrow{\text{Yes}}$  제조방법 신규진보시 곧바로 신규진보  
 $\downarrow$  No  
 제조방법 구성인정 X (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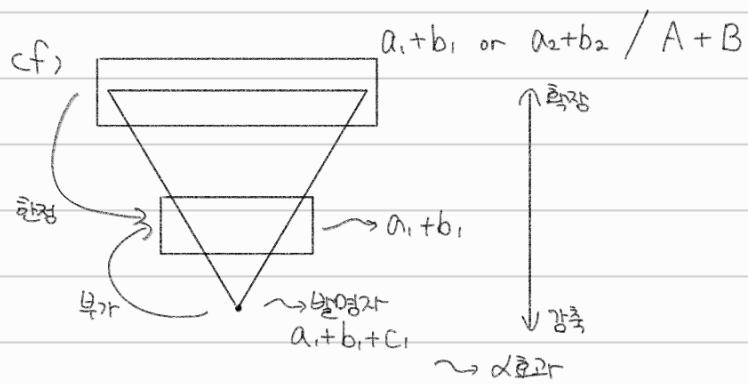
최신) 제조방법 포함 물건 성질 파악

D1

[청구항1]



상이 · 곤란



2007 후 807

99 후 734

2006 허 9104

2004 후 2260

[청구항1]  $A+B / a_1+b_1 \text{ or } a_2+b_2$

[청구항2] 제 1항에 있어서, A가  $a_1$ , B가  $b_1$ 인

[청구항3] 제 2항에 있어서, C 더 포함

[발명] 발명

배경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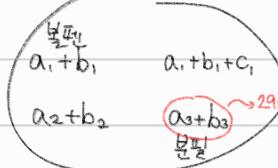
과제

$\alpha$  효과

$\alpha''$  효과

필기구

[청구항1] range  $A+B$



수단(구성)  $A+B$ , 바람직하게는  $a_1+b_1$ , 더 바람직하게는  $a_1+b_1+c_1$

효과  $\alpha$  효과

실시예

2007 후 4977

2014 허 1952

2017 다 231829

98 후 2856

기능식 청구항

ex) [청구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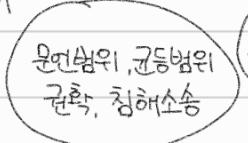


range → 29 ① 각호지위

[청구항1]

range

→ 제 3 자 발명



권리범위

문언해석 (보충 = 참작)

2017 다 209761

독허요건

발명·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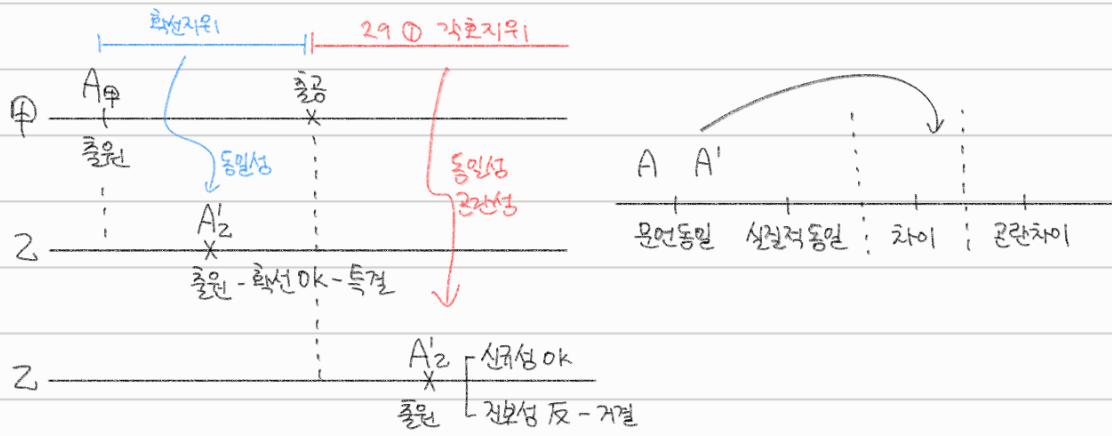
문언해석 (보충 = 참작)

제 3 자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제한해석可"

PBP

PBP

98 후 7110  
2001 후 1624  
2011 후 2819



2007 후 2797  
2002 후 1973

동일인 동일자 동일발명 2출원 등록 [ 어느 하나 포기 - 36 ② 무효사유 극복 X  
어느 하나 무효 - " 0

장치 → 실용 36 ②  
방법 → 특허

회원지위

선원지위

최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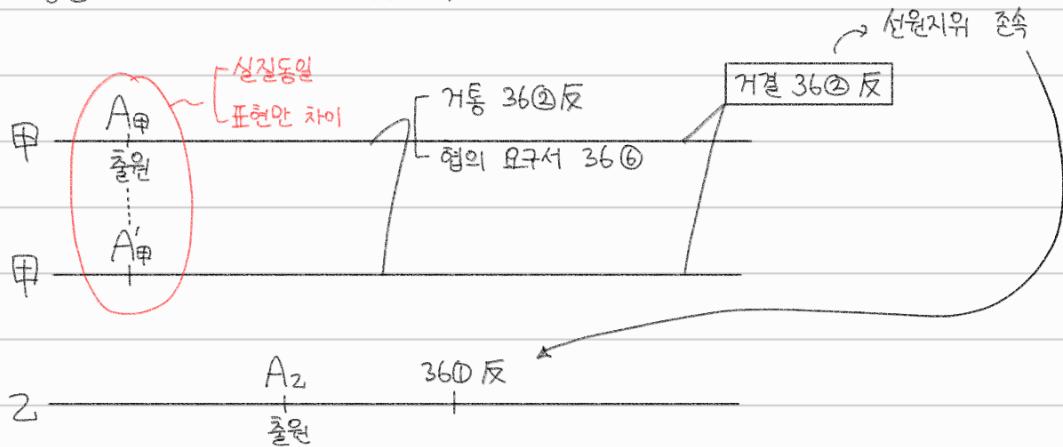
청구범위

동일인 X

O

동일자 X

O (형의제)  $\rightarrow$  36 ②



지식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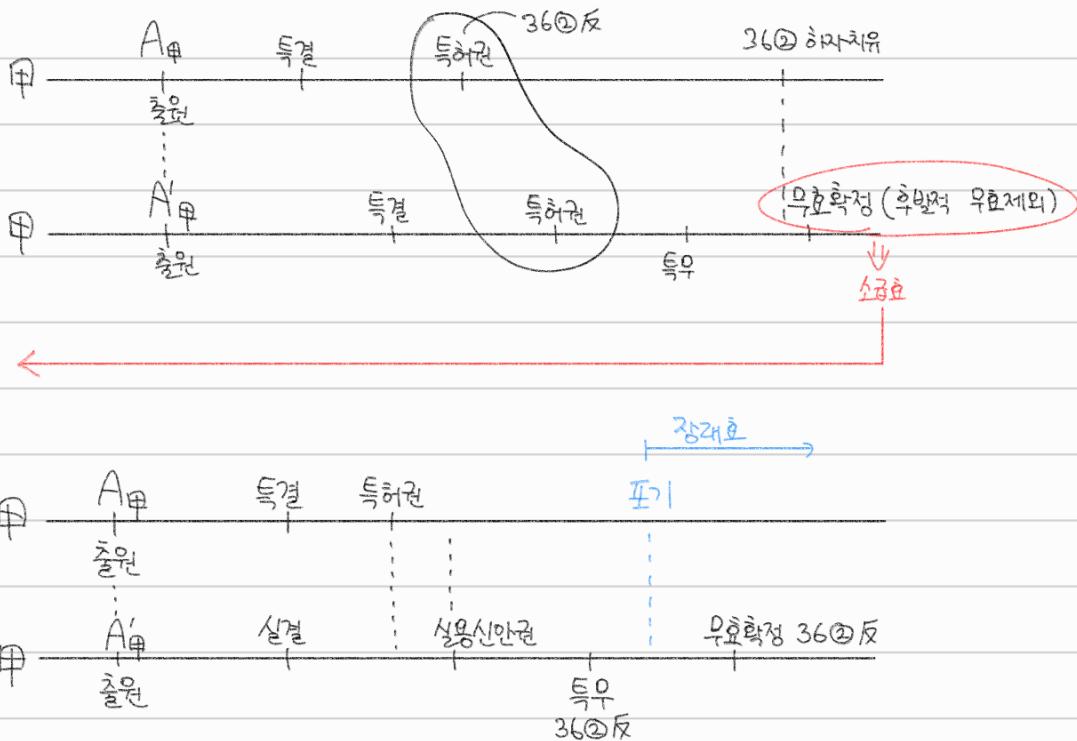
산업재산

특. 실  
A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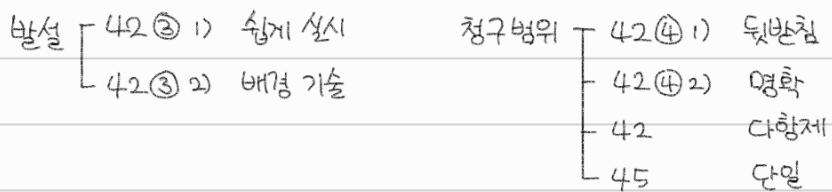
C I  
A

상  
A

지



42 ③, ④, ⑧, 45 → 기재불비



42 ③ 1)

42 ④ 1)

발명 쉽게 실시 생·사  
청구항 (공개)

## 발설 뒷반침

실시예 有 無

ctrl C + ctrl V 有 無

c) 미완성 vs 쉽게 실시

효과반복재현

신규 vs 진보

D1 vs  $\frac{1}{\lambda}$

## 쉽게 실시 vs 뒷받침 - 공개

동일

차이 : 진보차이

ex) [발설] 배경기술 - 우유마시면 키 큰다.

[첨구향] 커피 포함하는 키 성장용 조성물

기제 - 우유마시지도 키 안컸다.

## 구성 - 커피 마신다

한국 고대

실시예 -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닌 결과  
80% 키 10cm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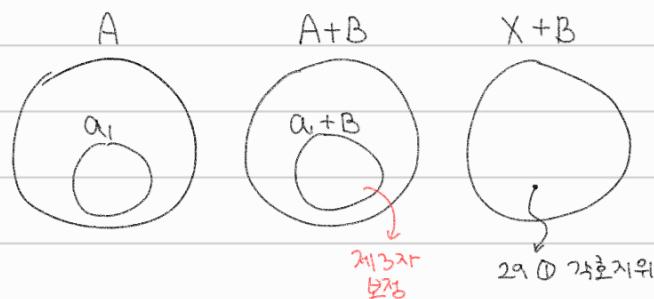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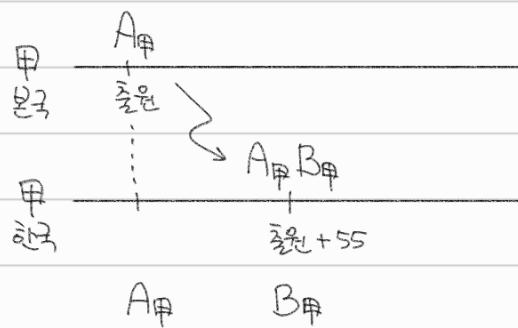
[청구항] A+B - 독립항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A가 a, 인 - 1항 증속항 by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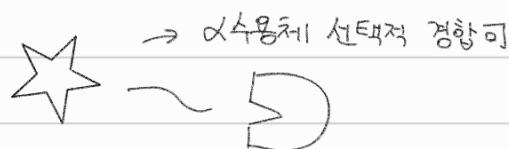
[정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C 데 포함 - 1 항 종속항 by 부가

[청구항4] 제 1항에 있어서, A가 X인 - 독립항 by 보정





쉽게 실시 - 생산 - 용이 재현 - 미생물  
 사용 - 명확 이해 - 화학·약학



$\alpha$  수용체 저해  $\rightarrow$  심장병 치료  
 약리기전

[는 심장병치료  
 실시예×

마이크 - 음성인식부 + 손잡이

[청구항] α가 특징인 음성인식부 **포함** 마이크  
가능성

[발명] α가 특징인 음성인식부

기재 + 출원시 기술상식

(기탁) + 출원시 용이입수

(출원시) 용이입수 O X

명세서 입수방법

(기탁)

(주) 출

(기) 출

(서) 출원서 취지, 증명서류  
명세서 수탁번호

보정명령 → 기탁절차 목표  
46反 (16)

국내 소재지 기탁기관

생략可

42③ 1) 反 출원거절  
29① 本 反

출금

기탁 X → 42③ 1) 反 거통

29① 本 反

거절

출원+심청

(기탁) → 분양可 → 용이입수

① 인정 X

② 인정 X

144p 1b. I

[청구항1] 1-100°C preferably 5-20°C  
 A such as α<sub>1</sub> or α<sub>2</sub>

[청구항1] 1 - 100 °C  
 [청구항2] 5 - 20 °C

이중한정

152p III

[청구항1] 구성 1, 구성 2 및 구성 3  
 1-50% 2-10% 20-30%

포함 발명 이후(경험...) 폐쇄형

개방형  
 미달은 OK  
 초과면 시도

→ {  
 - 모든 최대 100% 미달  
 - 모든 최소 100% 초과  
 - 하나 최소 나머지 최대 100% 미달  
 - 하나 최대 나머지 최소 100% 초과  
 } 42(4)2) 反

153p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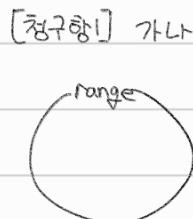
"불명확" → 명세서 + 출원시 기술상식

ex) [청구항1] A+B or C

[발설] A+B or A+C 이다.

155p VI

"오기" + "면밀히 검토" → 42(4)2) 反  
 42(3)1) 反  
 42(4)1) 反



156p IX

[청구항1] 가나다

[청구항1] 가나다

[청구항2] 거너더

[청구항2] 거너더

157p 19

1. 2차시험 → 공유 - [절차  
 재산권]

특반권 0% 출원 - 33①本 反 - 무권리자, 모인자

특반권 10% 출원 - 44 反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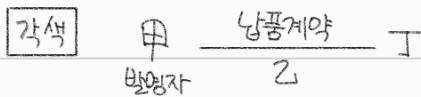
발명자 - 공동발명



승계인 - 계약 + 출원 전 - 출원 대행요건  
 명시  
 육지  
 출원 후 - 명의변경 효력발생요건

→ 이중양도

II



甲,乙 공동출원 - 乙 법적지위? - 공유자

158p 18

단일성  $\begin{cases} \text{청구항 1] } A+B \\ \text{청구항 2] } B+C \\ \text{청구항 3] } C+A \end{cases}$

[청구항 1] A

[청구항 2]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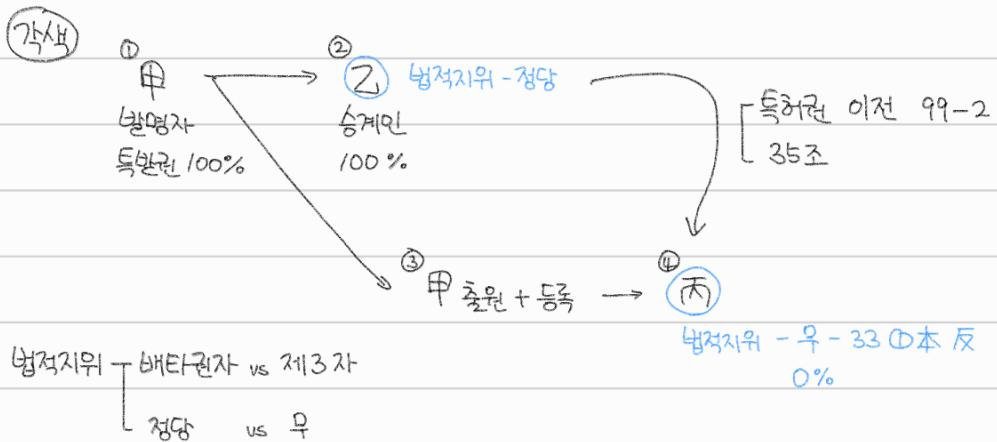
경 6 1) ok

경 6 2) 反

경 6 2) 反  $\rightarrow$  if A 신규전보 X

161p 19-1 I

38 ① 출원전 승계 - 먼저 출원시 대항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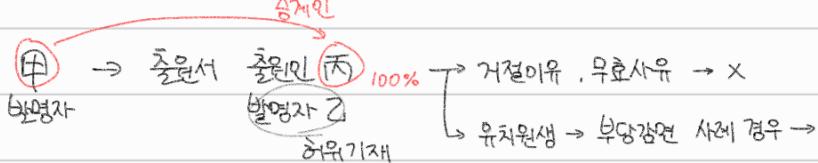
162p II

A  $\leadsto$  A' B

III

출원 + 특허  
33 ① 本 反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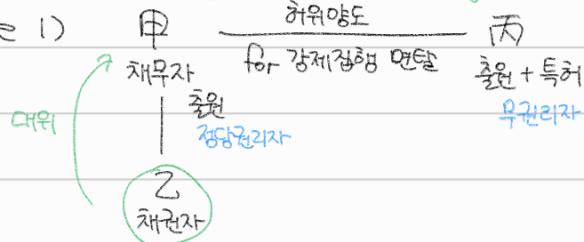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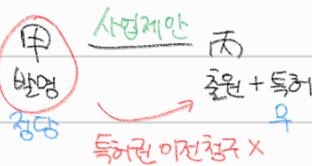
168p VI

### 99-2 도입 전

Cas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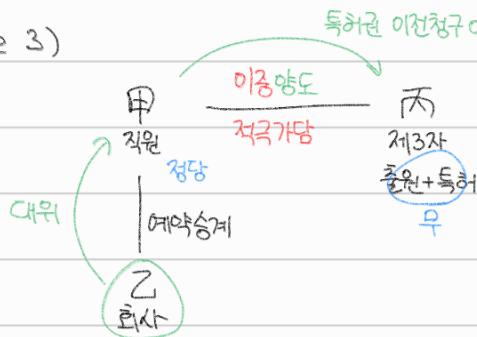


Case 2)



170p VII

Case 3)



### 4) 99-2 도입

5 : 5

乙 — 丙

연구원 대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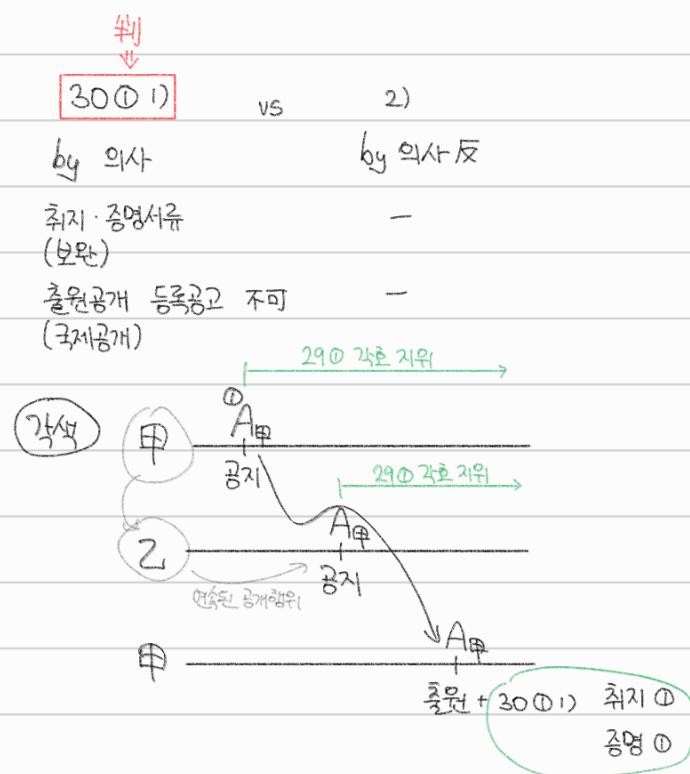
예약승계

甲

회사

### Part 3 출원절차

179p 20. I



절차 완화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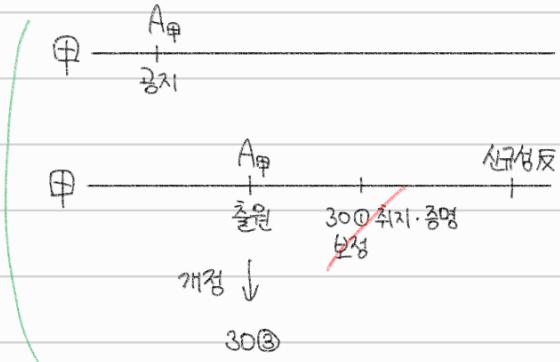
(71)

※(서)

set 1) 30 ③ →

set 2) 연속된 공개행위 (判) → I

set 3) 분·분 우주 자동승계 → 52④



183p 21. I

cf) 기재 + 출원시 기술상식



보정 분할 분리 변경

신규사항 추가X ○ ○ ○ ○

거절 청구범위 내 ○

183p 22.I

보정각하

1. 취지

심사관 업무과종

2. 내용

(최후 재심사) + 41 ② + 41 ③ ] 심사한적 X  
51 ①

3. 51 ① 취지

보정 - 거통 반복

4. 51 ① 괄호 취지

[보정 - 거통 번복 우려]

[출원인 이익]

5. case 1, 2, 3 / 4 判

[청구항 1] A

→ [청구항 1] 29 ② 反 → 재심사 청구 (=보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B 더 포함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B 더 포함

[차용]

42 ④ 2) 反 by 보정

case 1) 청구항 삭제 → 42 ④ 2) 反

case 2) 청구항 삭제 + 항 잘못 놓기 → 42 ④ 2) 反

case 3) 청구항 삭제 + 택일적 기재 누락 → 경 5 反

case 4) 청구항 삭제 + 무관한 보정

186p II

ex) [청구항 1] A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B 더 포함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C 더 포함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C가 C인

⇓

[청구항 1] A+B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C 더 포함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C가 C인

188p IV

A+B  
42(4) 2) 反 거통 → 극복보정 - by 보정 새로운 거절이유  
(=발명보정)  
A+B  
↓  
거절이유有 (ex) 신진反)

189p V

보정각하 사유

- 예고통지 X, 단독불복 X
- 번복 X

Case 4)

[청구항 1] A+B

삭제한 청구항 직접인용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A가 α인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C 더 포함

수제 청구항과 무관 → [청구항 4] α 단계, β 단계 포함하는 α+B 제조 방법

↓ 청구항 1 29 反  
① 보정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A+B에 있어서, A가 α인

[청구항 3] A+B에 있어서, C 더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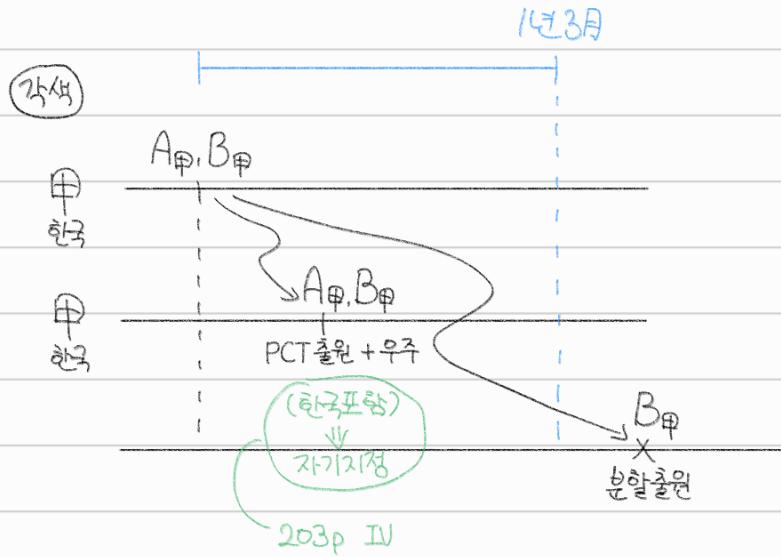
[청구항 4] α 단계, —————

④ 청구항 삭제 행위 있더라도  
이와 무관한 보정으로  
거절이유 발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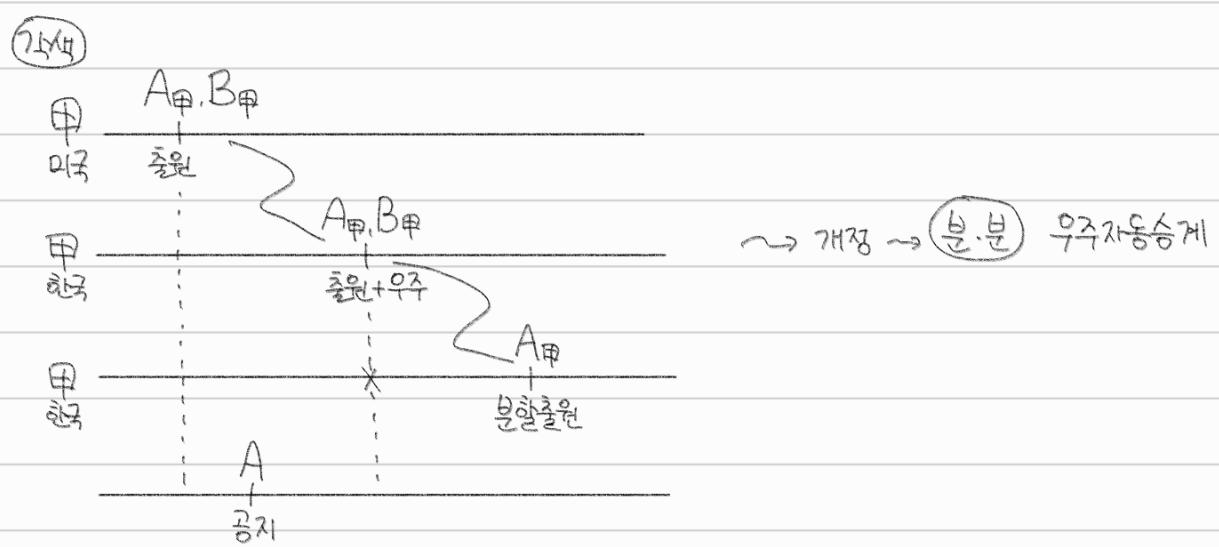
⑤ ① 결론 해당 X  
↓  
보정각하 + 거절

→ 42(4) 2) 反  
구성불명학  
→ 보정불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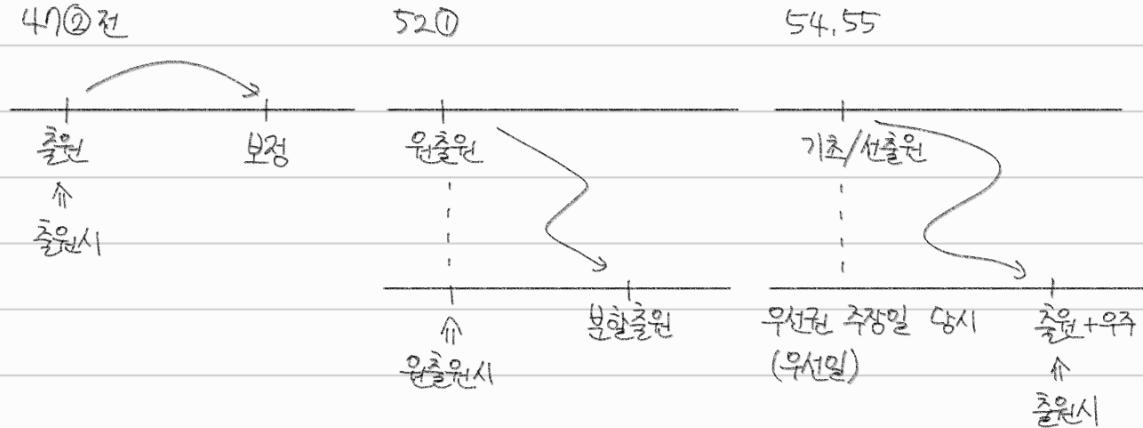
193p III



194p I



195p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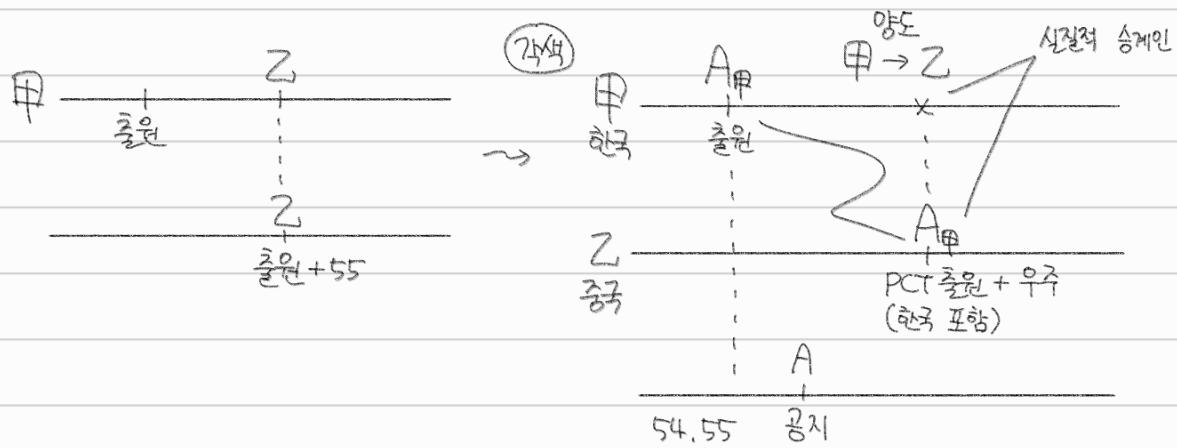


196p III

국내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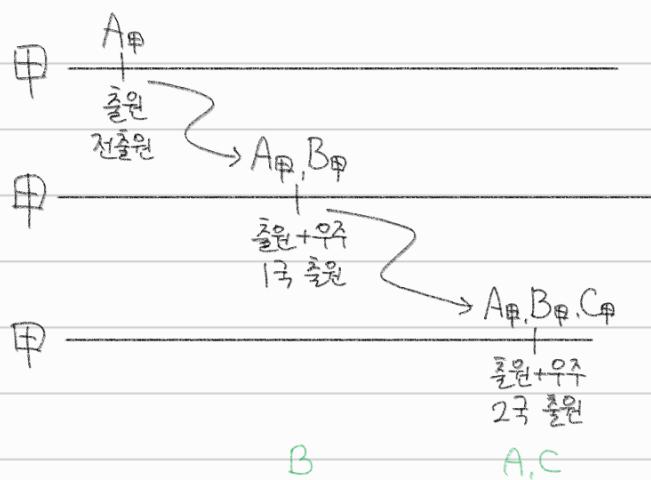
조약우주

(주) 선출원인, 실질적 승계인 우주승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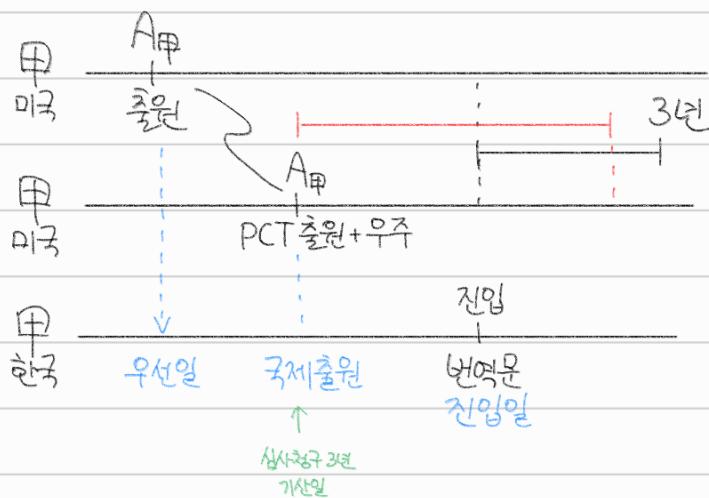


206p V

이중우선권 주장 방지



209p 25. I



2/Op I

(각색)

거통				거결/기각심결/기각판결		
구성	청구항 1	D1	대비	구성	D2	대비
1	A	A	동	1		차
2	B	B	동	2	B'	차
3	C		차	3	C	동

다른  
 거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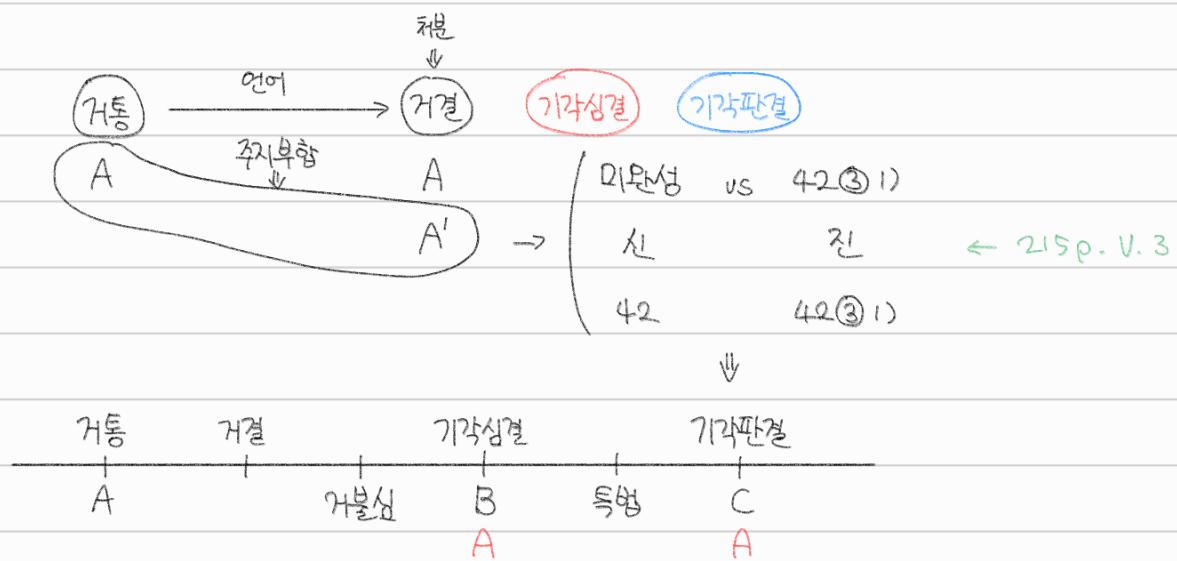
↴ D2 B+C

Part 1. 절차총칙

Part 2. 규정의 유

Part 3. 출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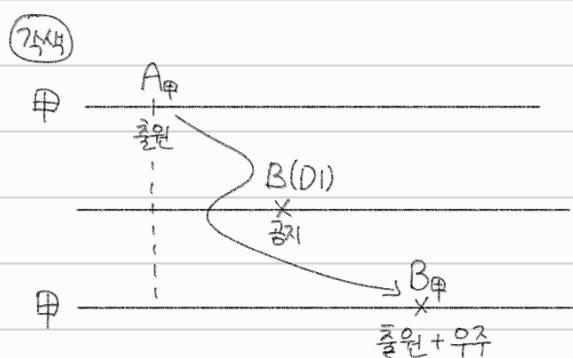
Part 4. 심사·공개



Case 1) 주선행발명

Case 2) 우선권주장

211p. II



거통

거결 (기각심결, 기각판결)

B는 신규성 反 by DI

동일발명 X → 우주효력 X → 출원일 기준

↑  
DI은 29① 각호지위 X

↓  
신규성反 by DI

212p. III. I

case 3) 1항 전보성反 by DI 거통 → 2항 추가보정 → 1항 2항 전보성反 by 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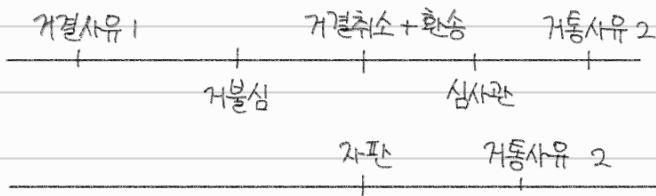
III. 3

(상표)

거통 → 거결 → 기각심결  
A,B A B

(특허법)

거부심 [자판] - [특결심결]  
[환송] [거통]



219p VII

case 4) 1항 전보성 反 by D1 거통 → 1항 진보성反 by D1 D2  
알데하이드 기각판결 알데하이드 = CH<sup>o</sup>

## Part 5 특, 실, 진

219p 21 I

민법  
일반법 vs 특별법  
공유물 분할청구 ① - 공유물 분할청구  
공유 ② (③ 동의규정 有)  
③' → ③'

1. 공유 법적성질

공유 vs 합유 → 공유 ∵ 동업관계 X

2. 공유지분 양도시 동의 要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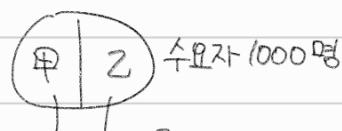
타공유자 불이익 방지

3. 공유물 분할청구 타공유자 불이익 → 문제 X

4. 민법 공유물 분할청구 준용

민법 현물분할  
대금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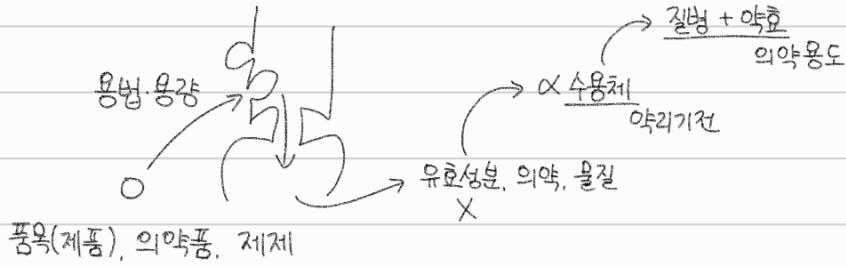
100개 생산 ← 공장 ← 공장 → 1개 생산 → 丙 10,000개 생산



223p III

(각색)





주성분 + 첨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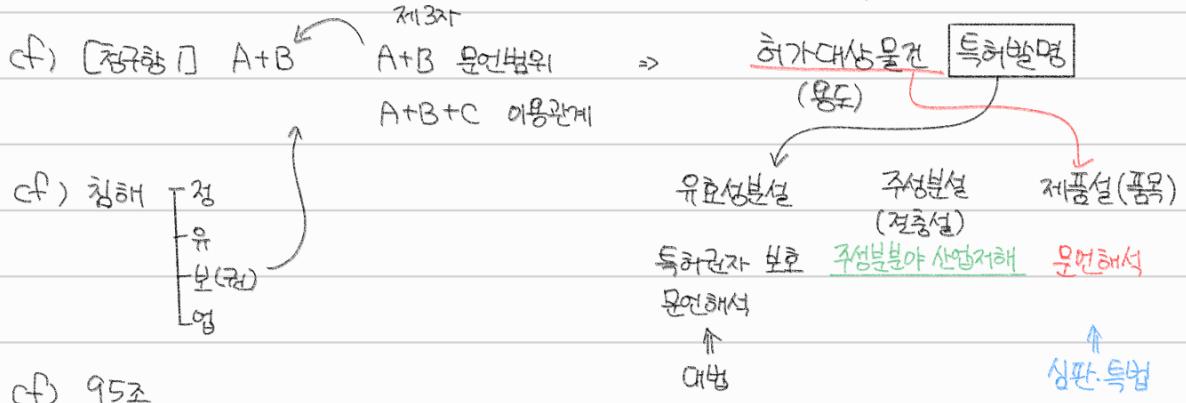
- 유효성분 X
- 염화합물 XA

227p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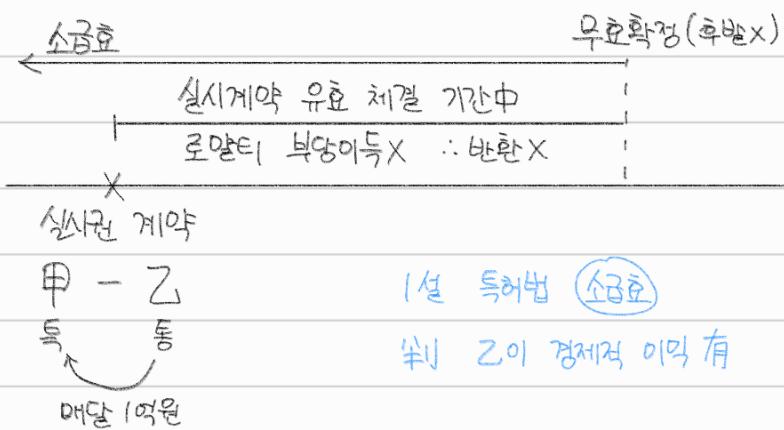
(각색)

			출 20년	원 존속기간	연장존속기간
甲	[청구항] X, Y	등록	존등	35조 허가제한 (권리범위 제한)	
	출원		준출		
	[발설] 탈모치료, 전립선 비대증	치료			
		구성	품목		
		X A + α	의약품		
		1일 1회 0.5mg	치료효과		
		탈모치료제	의약용도		
Case 1)	침해			침해 X	
乙	YA + α				
	1일 1회 0.5mg				
	탈모치료제				
Case 2)	제조·판매	침해		침해 X	
乙	XA + α				
	1일 1회 0.5mg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Case 3)	XB + β				
	1일 1회 0.5mg	침해 O			
	탈모치료제				

95조 해석



236p 28. I



237p II

효력 - 질 톤 - 설·이( )·포·처  
전 - 설·이( )·변·소(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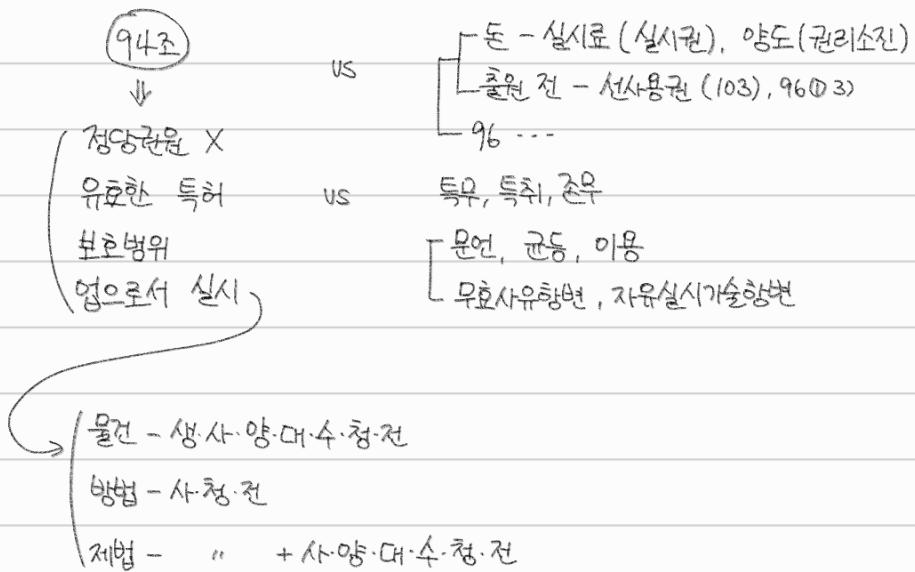
대항 - 질 - 통 - 설( )·이·변·소·처

전용실시간 계약 → 등록 → 효력 → 동의없이 생산·판매

범위 지역  
기간  
내용 - 생산·판매 특허권자 사전 동의要

대가

## Part 6. 침해실체



238<sub>p</sub> 29. I

각색 甲 [청구항] A+B+C 발명

c) 법적지위 T정당 vs 무

乙  $A \cdot B \cdot C$  丙  $A+B+C$  人用  
일본

비교 vs 제3자  
침해자○ X

법적지위 申 vs 丙  
베타글자 제3자 - 침해자X - 속자주의

原告 vs 被告

제3자 - 침해자 - 생산이란 ...

권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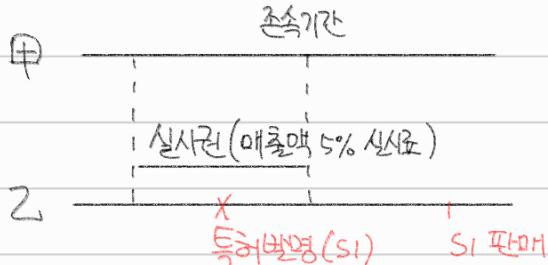
민사 - 침금·손배·신용

형사 - 고소

법적 구조

24 | P II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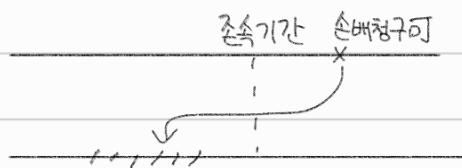
243<sub>p</sub> III

침금 · 권리소명 후 不可

손배 권리소멸 후可 + 소멸시효전

권학 권리소멸 후不可

안 날 3년



## Part 7.

IV

미타권자

제13자

침해소송

- 침금소송
- 침금 가져분
- 손배소송
- 신용회복 소송

권리범위 X

특취·특무·존무

무호사유 0

중지신청

1

재량

수급점 권활

## 권리범위 0

|  
|  
|  
(심지방병원 특법 대법  
X O O

심판원 특별 대병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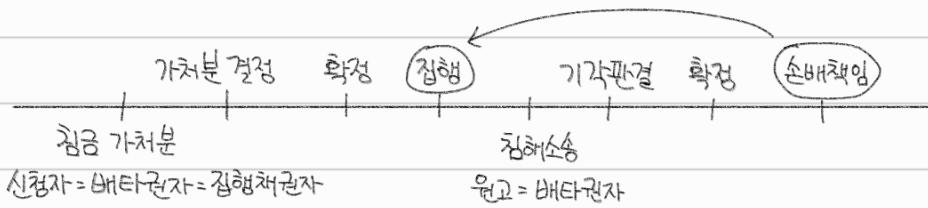
침금소송 - 침해입증 - 침해금지 + 폐기

## 침금 가치분 + 침해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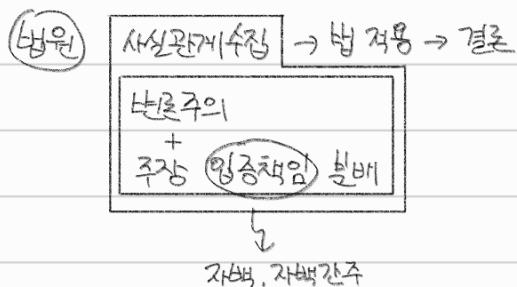
## 보전 필요성 (피부전 권리)

침금 첨구권 + 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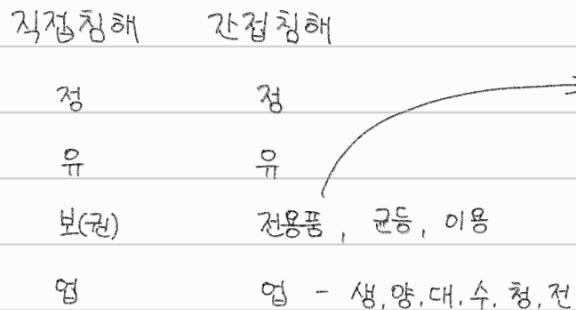
244p VI



245p VII



248p II



cf) 甲 [청구항]  인 프린터

254p IV 잉크카트리지 + 프린터 본체  
A B

乙 프린터 대리점 A 교체  
丙

21사이클 행위  
(재활용)

cf) 甲 [청구항] A + B + X 패드

丙 A + B 패드 → 반도체 공정 → A + B + X

[청구항 1] A + B + C

① A → 공업적 생산 → 가공, 수리 → 구성요소 완비

② A → A + B + C 100만원  
50만원

A + X → 타용도  
연필 1,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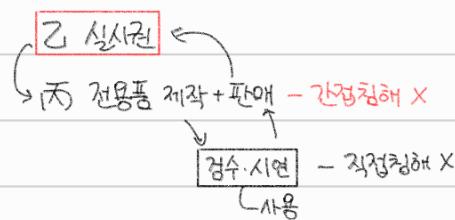
실현적 가능성  
- 시장적 가능성  
- 실증성

③ A 국내생산 → 전량수출 → 중국 A+B+C 생산 → A 간접침해 X

∴ 생산 = 국내생산

241p 30.I

申 [청구항1] A단계 + B단계 미장방법



253p III

申

제 3 자

[청구항1] A+B+C

전용품

직접침해

권리범위

A: 전용품

121조 특허발명 생산에만  
사용 물건

A

A'

A+B+C

A'+B+C

→ 121

256p V

확대 → A+X

A+B+C+X 이용

균등

더 나은 효과  
아  
타용도

간접침해

128조 ① 고 or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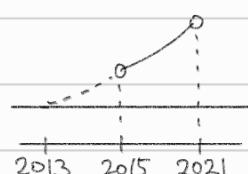
침양

② [(침양 - 공제) < Max] × 배이 + (공제 + Max 초과 - 실시권 不可) × 험로

④ 침해자 이익액 = 침양 × 침이

⑤ 험로 - (침양 × 단가) × 5%

/ ⑥  $\frac{+ \alpha}{\square \square \square}$  → 고, 중과 × ~ 감액可



⑧ ⑨ X 3배 고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법원 - 사실관계수집 → 법 적용 → 결론  
 변론주의 - 주장·입증책임분배 - 경감  
 (자백·자백거부)

128 ① 고. 과 + 침해 + 손해발생 + 인과관계 + 손해액 → 배타권자 책임  
 ↓ ↓ ↓ ↓  
 경감 경감 경감 경감  
 ↓ ↓  
 120 128 조와 무관 128 ②-①

260p IV ① 변리사 감정 침금

② 설명서 손배 고의과실

③ 지시 신용 "

④ 권리 손해증액 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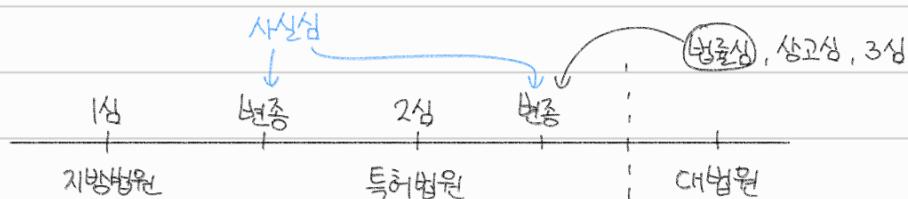
判  
그법 현행법

128 ⑤ 128 ⑤

통상실시로 합리적 실시로

甲 乙  
배타 통상

丙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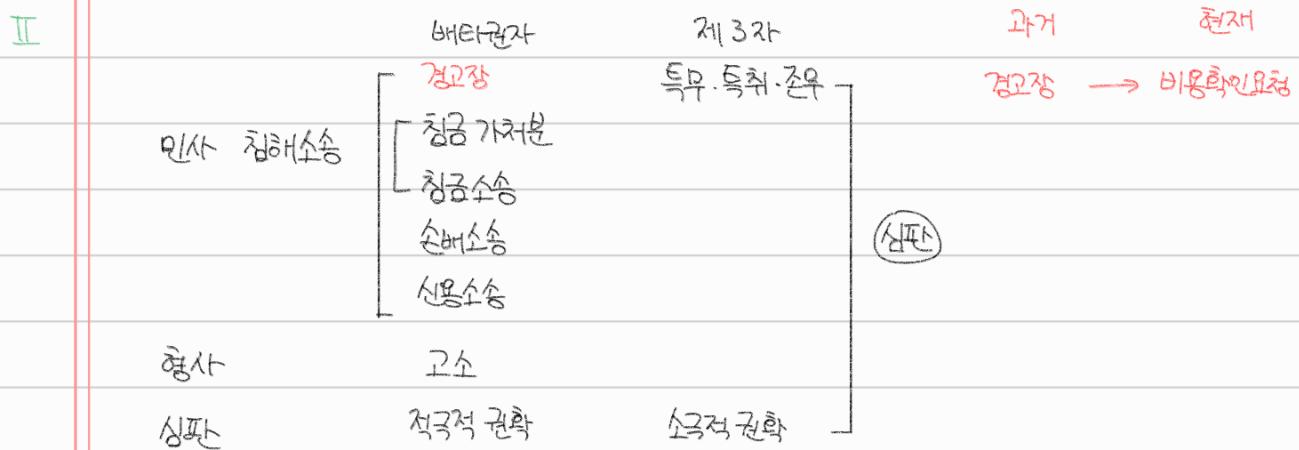
265p VII 128 ④ 침해자 이익액

VIII

- 한계이익 - 고정비용 = 순이익  
 세탁기 - 100만원  
 모터 - 침해품 - 한계이익 X 기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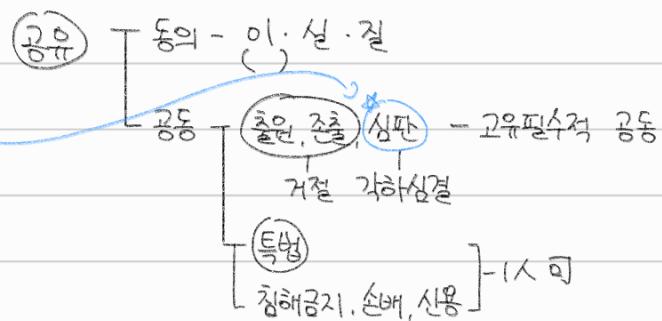
267p 32. I

- 보상금청구권 - 합동 / 128 적용 X
- 직무발명 보상금 - 보상금 / 128 적용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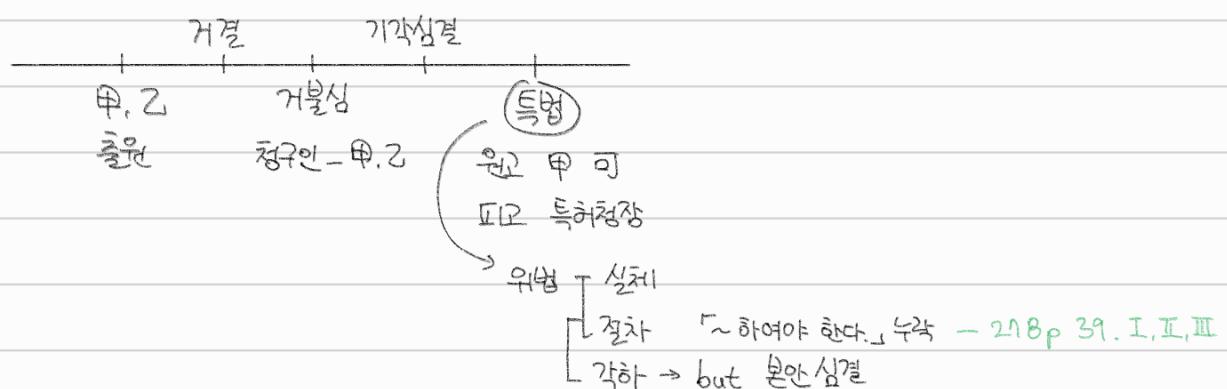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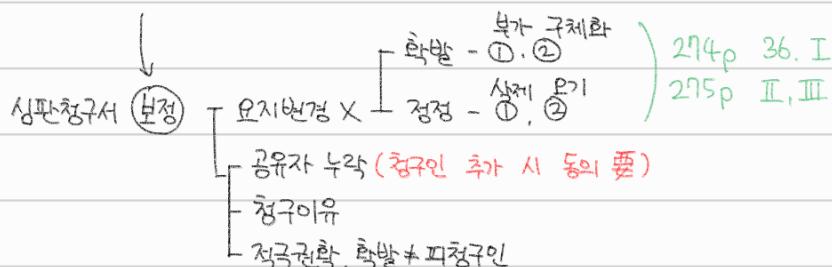
### Part 1. 심판·소송

272p 35.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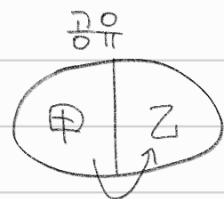


[ 141 보정명령 → 서 각하결정

判 보정명령 → 각하심결



272p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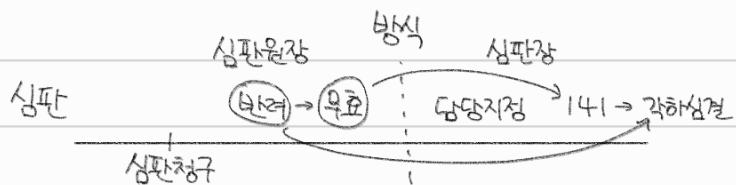


지분 무효심판 → 각하심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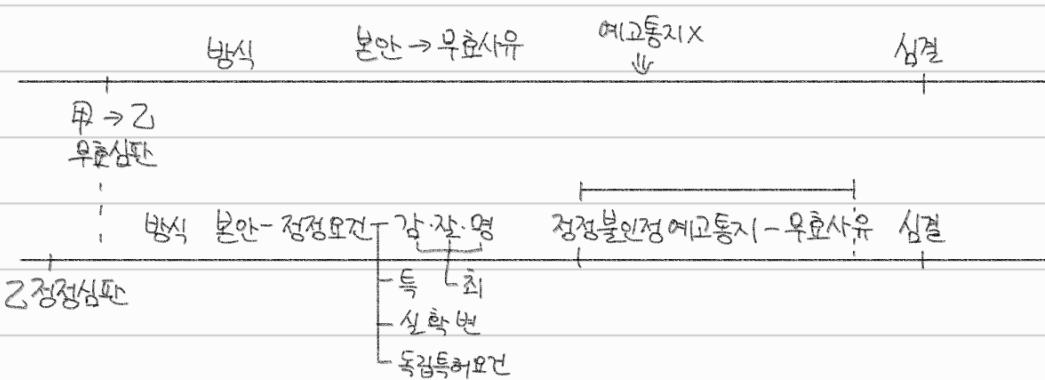
甲 → 乙

청구인 피청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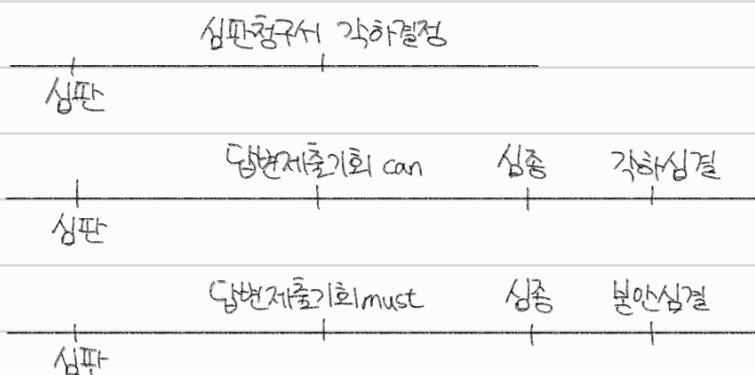
276p 37. I



277p 38. II



278p 39. I, II



280p VI

직접심리 can → 의견제출기회 must

작권증거 can → //

284p 40.I.II

심결 - 심결등본 주문 - 각하, 기각 속하지 X

[이유] - 확발은 청구항 2, 4 권리범위 속한다.

소극적 권학

심판청구서 청구인 vs 피청구인

[대리인]

사건표시

C<sub>1</sub>+d<sub>1</sub>

처분권주의

+ 확발설명서 [도면]

+ 수수료

청구취지 - 별첨의 확발은 특허권리범위 속하지 않는다.

청구이유 - 문언범위, 균등범위 X + 증거

(주장)

직권범위 + 증거조사

[청구범위]

[청구항1] A+B

[청구항2] C+D

[청구항3] a<sub>1</sub>+b<sub>1</sub>

[청구항4] C<sub>1</sub>+d<sub>1</sub>

\*특허, 특우, 권학 - 청구항별 청구 취하 결론

법원

심판

처분권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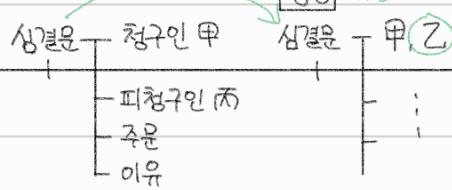
"

보존주의

직권탐지주의

(직권심리·증거)

286p V



심결취소판결

심결-甲,乙

특법

심판

일사부재리

중복심판금지

누구든지

심결시

(동일사실), (동일증거)

본안심결 확정 (결정, 소하심결제외)

丙특허

기각심결 확정

甲

특무

진보성反 by D1

Z

청구시

丙특허 각하심결

특무

진보성反 by D1

甲

(동일당사자)

동일심판

전심판 계속 中 심결시

모순·저촉방지 + 심판경제

丙특허

특무

진보성反 by D1

甲

丙특허

특무

42 ③ 0 反

특무

특무

42 ③ 0 反

사실, 증거 상관X

\* 심판청구 적법요건

소 적법요건

심판청구이익

소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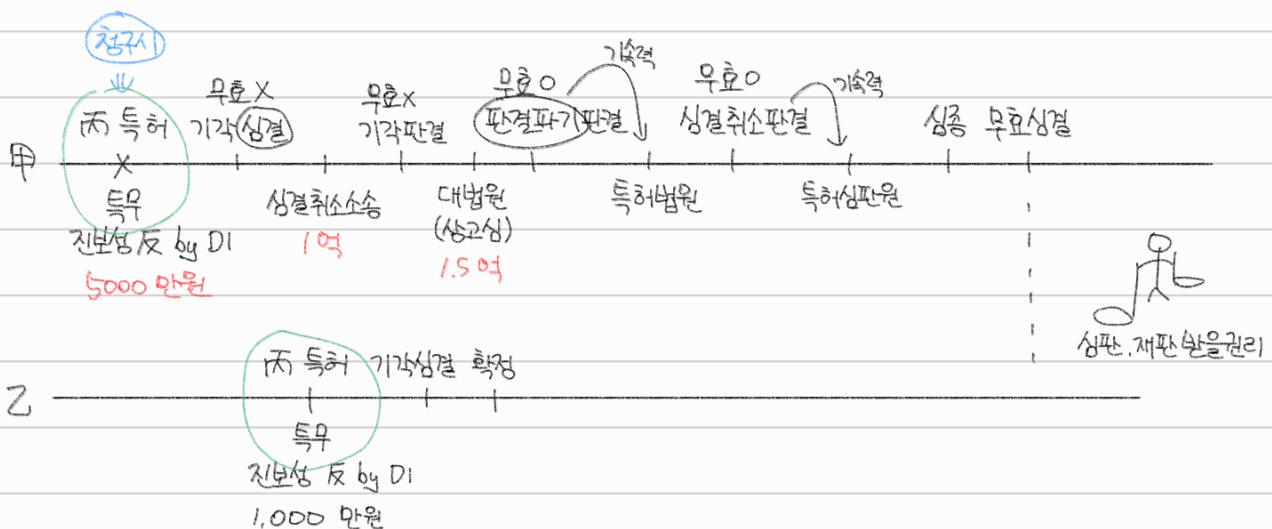
각하심결

각하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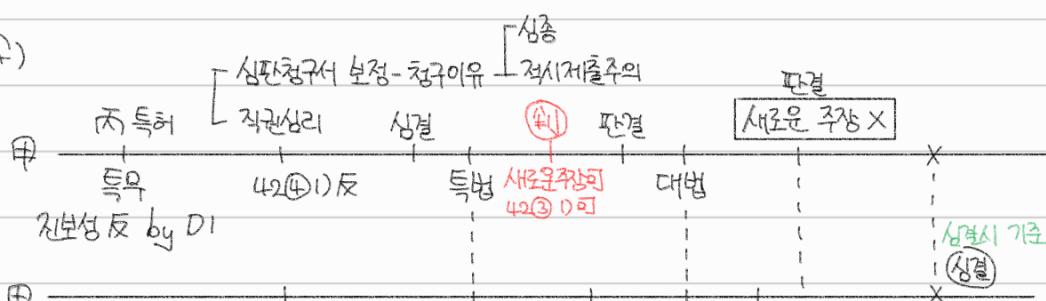
↓  
심결시

↓  
변론종결시

\* 일사부재리 (청구시)



c.f)



X : 모순거리를 찾지 & 심판경제

O : 대법원에서 새로운 주장 못하므로 허

일사부재리

중복심판금지

심판청구적법요건

"

모순·저촉방지

모순·저촉방지 + 심판경제

누구든지

동일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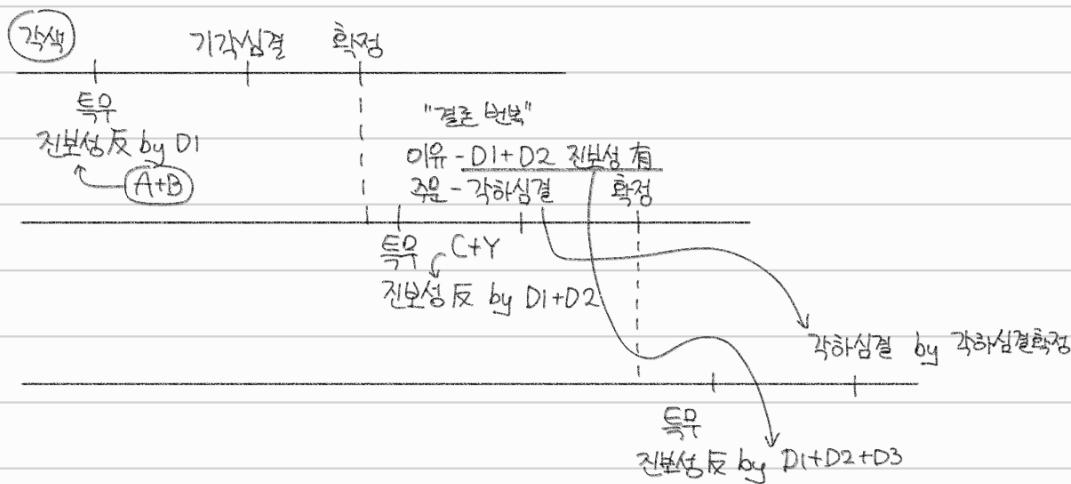
동일사실·증거  $\rightarrow$  심결시

동일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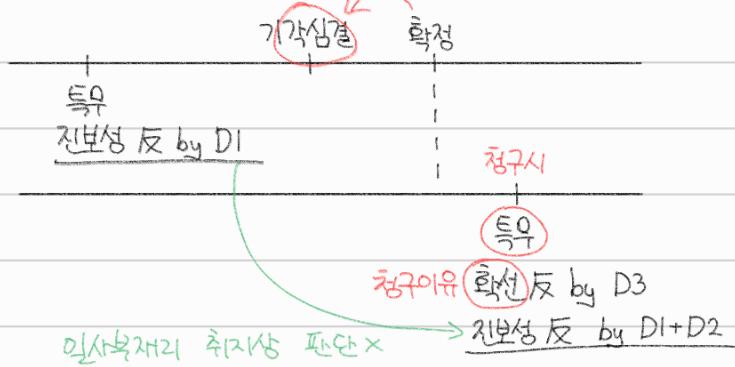
본인심결화정  $\rightarrow$  청구시

전심판계속中  $\rightarrow$  심결시

288p 41.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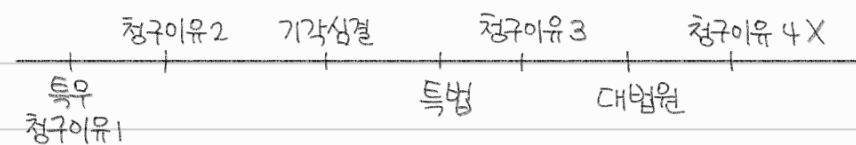


294p VII



일사부재리	기판례
(cf) 심판	법원
청구취지	청구취지
청구이유	청구원인

cf) 새로운 무효사유可



295p VIII

(각색)

기각심결 확정

IX

특무

진보성反 by D1

각하심결

특무

특법

42③1)反

진보성反 by D1+D2

새로운주장可

but 일사부재리 反 여부에 참고X

특취 vs 특무

신·진·선·확

신·진·선·확

[29①2)

↓

심사관검색

D1

↓

진보성反 by D1

특결

등록

(등록공고)

취통

취결

등록료

특취

진보성反 by D1

진보성反 by D1+D2

심결시

심판적별표건

청구인

(당사자자계)

특무·존무·정무 이 or 심

권학 [적극 특 or 전

          [소극 이

통실허 ①

          ③

307p III

심판	법원
청구시	소 제기시
심결시	사실심 변론증결시

직권당지주의  
(직권심리·증거)

변론주의 - (자백) 자백간주  
(의제자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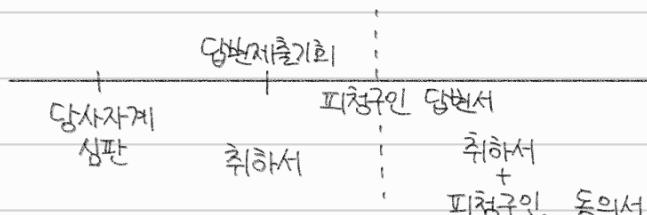
심판청구 적법요건  
(심판청구 이익)

소 적법요건  
(소 이익)

\* 각하심결

각하판결

308p V



최소신청  
결정계심판

당안지

1. 문제요지

2. 의의

3. 판단기준 - (학설) / 죄법 / 검토

4. 구체적 판단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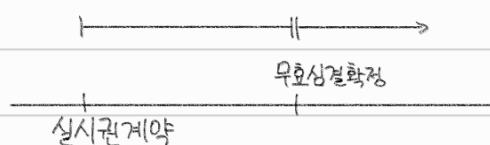
정  
유  
보  
업  
= 침해(특허법)

지역  
범위  
기간  
내용 - 생·사·양·대·수·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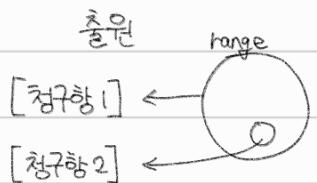
1설 신의칙 반 - 이해관계 = 특허권 대항 or 염려 - 실시권자는 실시권 범위에서는

VS

2설 신의칙 무관 - 이해관계 = 실시권 법률상 불이익 or 염려 - 아무런 제한 없는 실시권 아닌 이상  
(특허법, 민법 ...) 저조판매 or 장래 이해관계 인정 미



312p 42-1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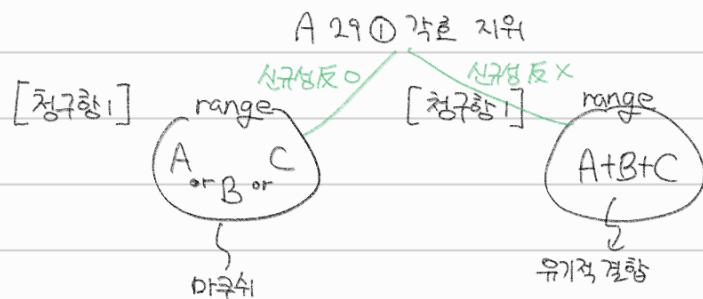
청구항 1 신규성 反  
↓  
출원 거절 (출원일체원칙)

## 청구항: 신규성 反

## 첨구항 | 무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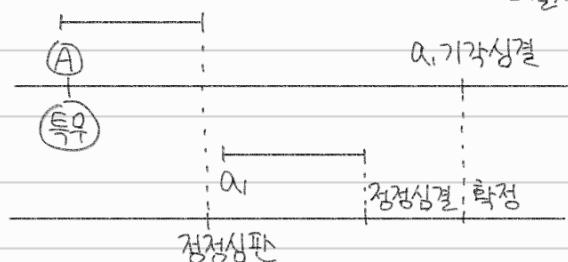
## ↳ 특취 특무 권학 - 청구항 멸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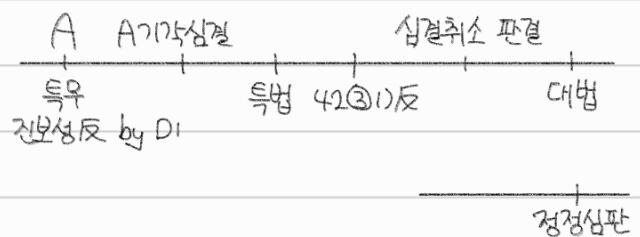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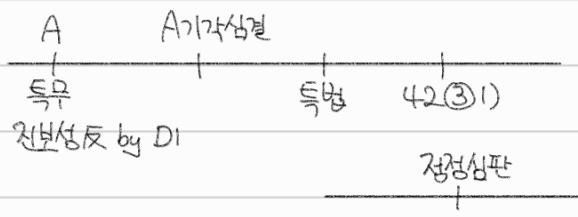


절차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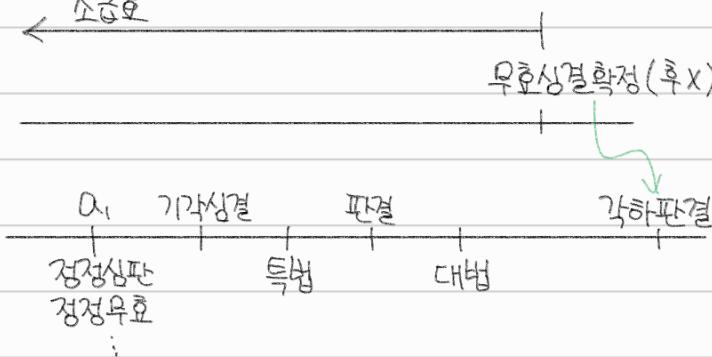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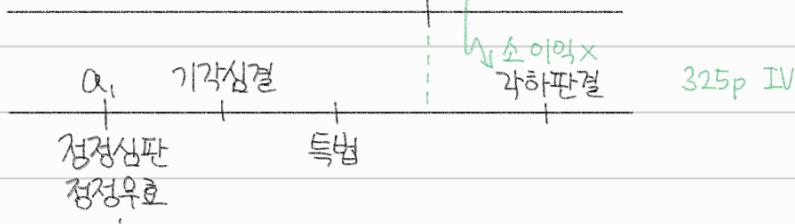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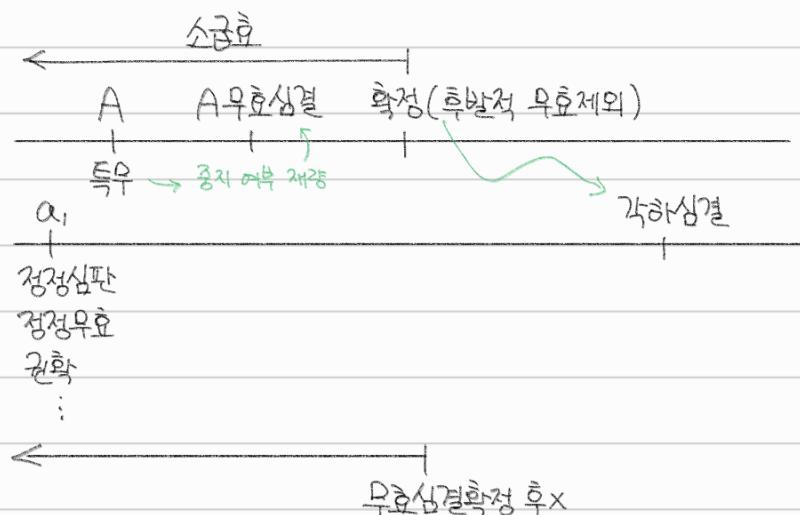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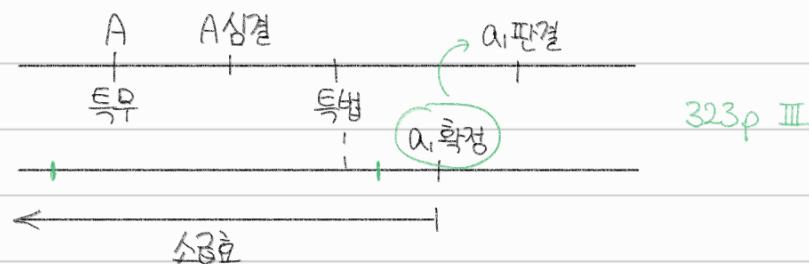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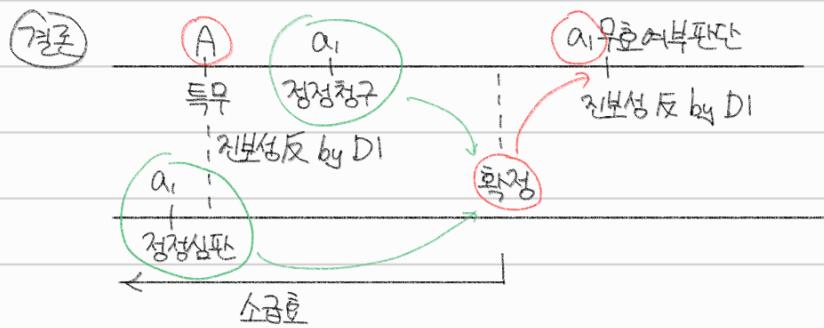
정정 무효사유 극복  
적차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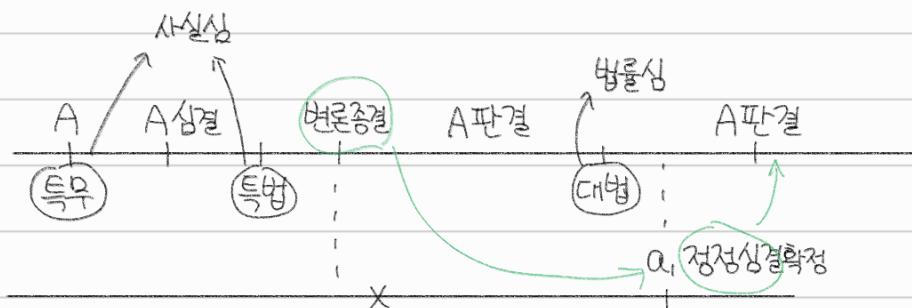
Step 3) 특별 변론종결 후 상황 → 개점추진 → 判



## 소급효 vs 소급효



313p 43 I



무효사유 극복기회  
출·특 보호  
제3자 불이익  
절차지연

(특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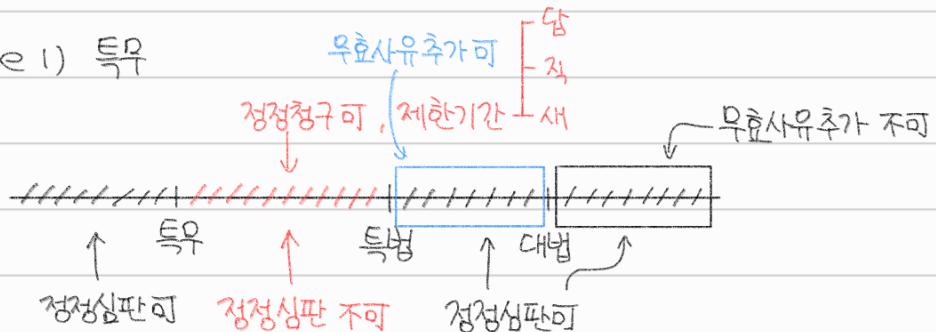
Step 1) 정정청구도입 → 정정심판 기한 제한 → [심판원中]

Step 2) 정정심판 可 ( $\because$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可) [특허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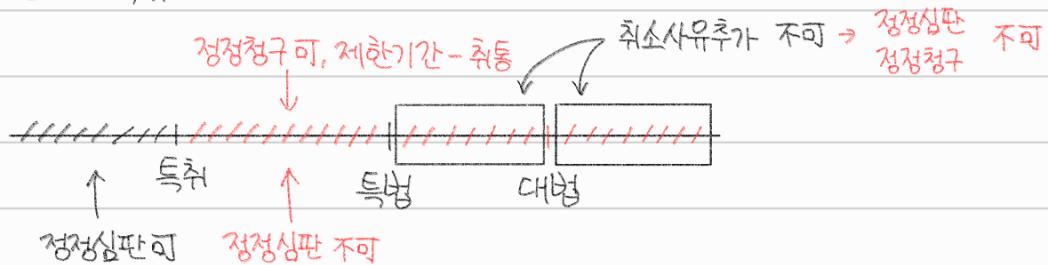
Step 3) 개정취지 → 무산 (현행 136②) → 判 [대법원]

[재심사유 준하는 위법X  
정정 전 명도로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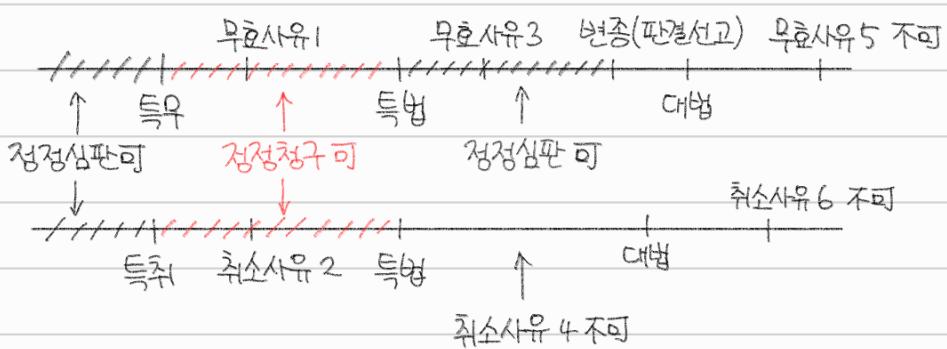
Case 1) 특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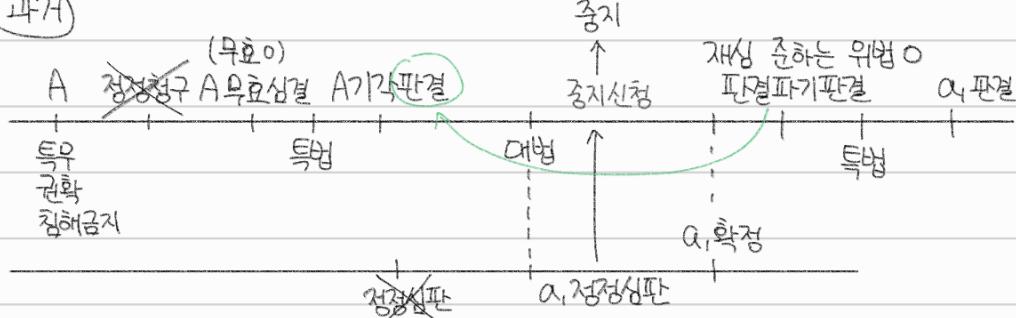
Case 2) 특취



case 3)



(과거)



(최신)

재심 준위법 X  
A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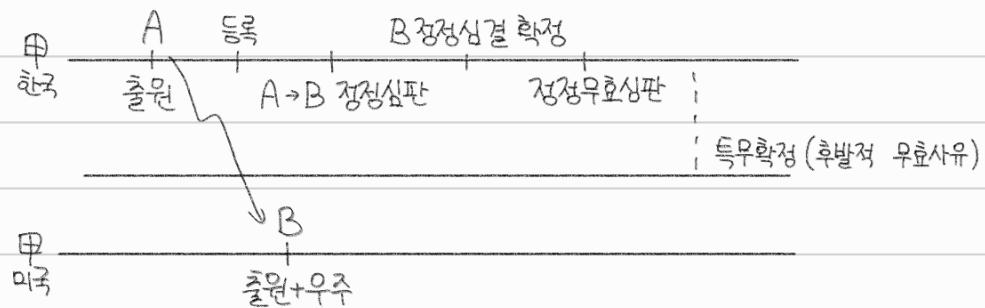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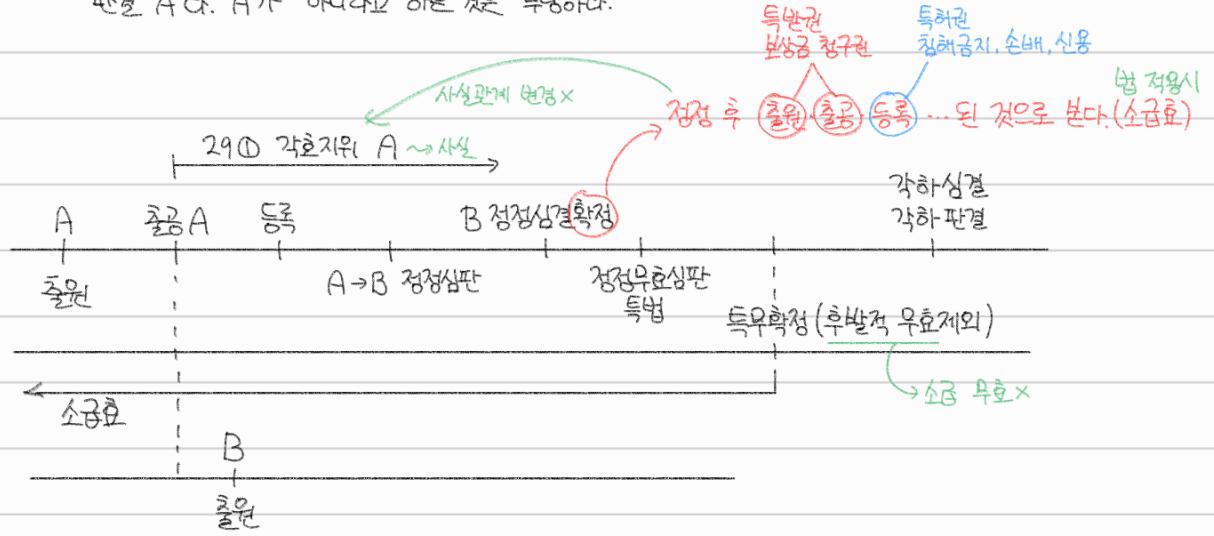
(무효X) 특법  
판결파기

327p VI

$A \Leftrightarrow A$  아닌데

甲 乙

판결 A다. A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26p V

명·도 정정

~~정정 +~~  $\Rightarrow$  [청구항1] A

정정 2 [청구항2] A+B

$\rightarrow A + B$

$a_1 + b_1 + c_1$

정정요건  $\Rightarrow$  정정일체원칙

정정전체불허

① 정정사항삭제  
정정보정 ② 오기수정

A

$a_1 + b_1 + c_1$

무효학정 (후발제외)

유효

정정요건

정정심판

정정청구

감·잘·영  
특  
최

실학변금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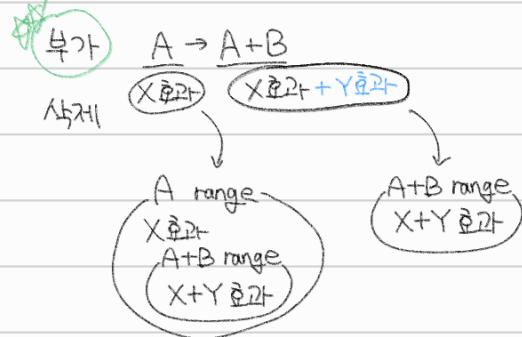
독립특허요건

무효·취소 청구항 제외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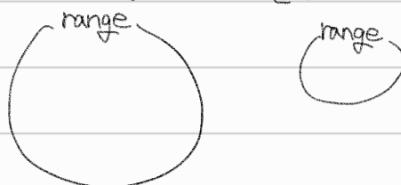
328p 44 I

실질적 변경 - 효과 변경 - 한정 (상위  $\rightarrow$  하위)



[청구항 1]  $A \rightarrow$  [청구항 1] X

[청구항 2] X [청구항 2] 삭제



cf)  $A \xrightarrow{\text{보정}} A$   
42(4)2) 反 정정 42(4)2) ok

의약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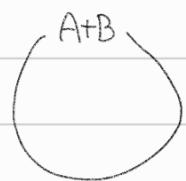
[청구항 1] X 포함 (심장병 치료용) 조성물

↓ 정정 약리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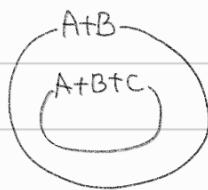
[청구항 1] X 포함 (수용체 저해) 심장병 치료용 조성물

331p Ⅲ

[청구항1] A+B → [청구항1]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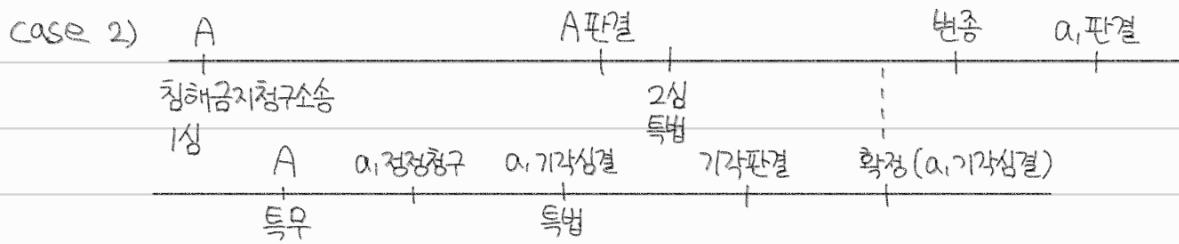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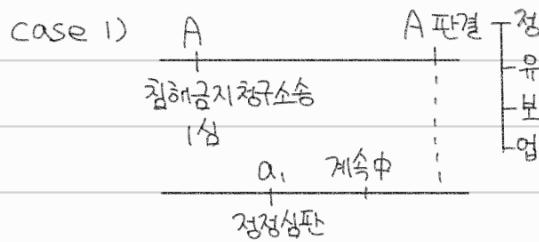


[청구항2]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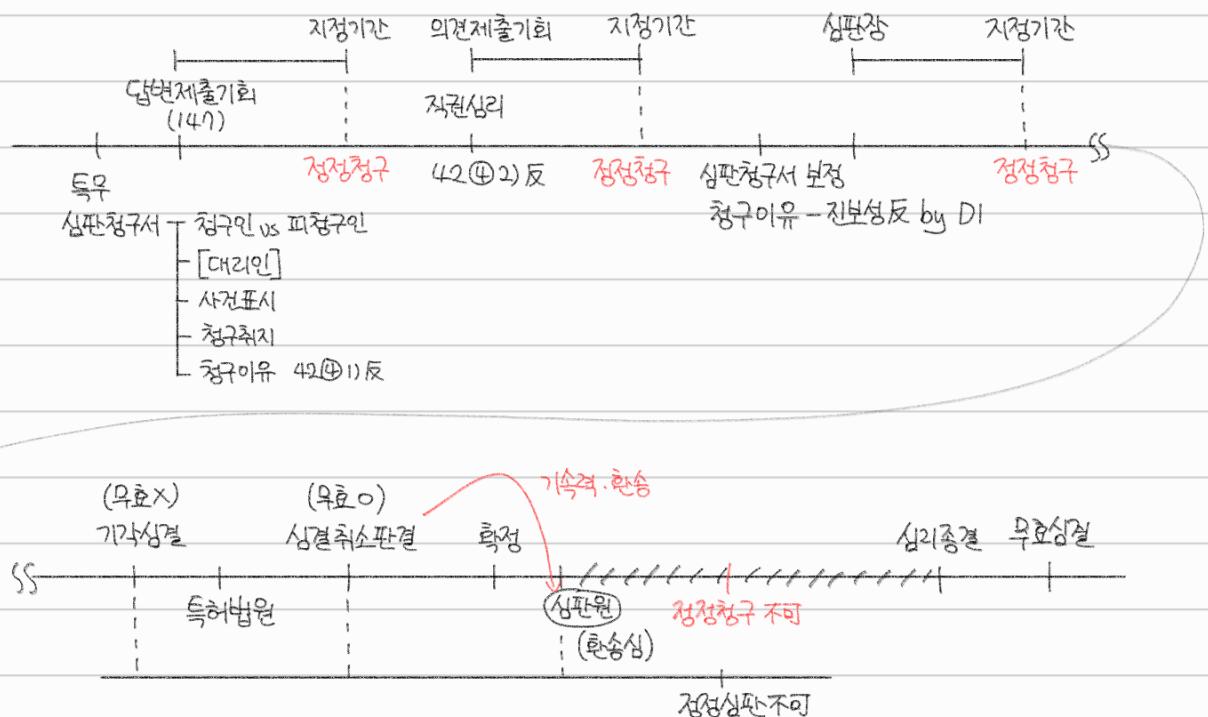
333p V

VI



335p VIII

무효사유 attack vs 정정 defence



338p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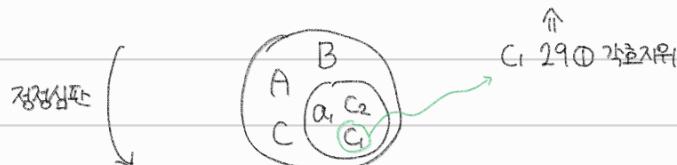
- 거통 → 거결, 기각심결, 기각판결
- 정정불인정 예고통지 → 정정불허취지 심결, 기각판결

341p XII

(각색)

[청구항]  $A \text{ or } B \text{ or } C$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A가  $a_1$ , C가  $C_1 \text{ or } C_2$



[청구항]  $A \text{ or } B$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A가  $a_1$ , C가  $C_2$ 인

42(4)2反

[청구항] [변경]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A가  $a_1$ ,

↓  
요지변경  
↳ 보정무시

정정기각

cf)  $A \text{ or } B \text{ or } C \rightarrow A \text{ or } B$  감축

$A + B + C \rightarrow A + B$  확장

342p 45

정정확성 → 소급효

甲  $\frac{A}{\vdash}$  42④2)反

권학

손해배상

침해죄

乙  $\frac{A}{\text{실시}}$

乙  $\frac{\vdash}{\text{A 정정청구}} \quad \text{정정인정} + \text{기각심결} \quad \text{확정}$   
42④2)反  
 $\leftarrow A \text{ 소급효}$

청구항 제3자

(o)  $A \text{ vs } A$

(x)  $\frac{A}{\vdash} \text{ vs } A$

형법에서는 적용X

권·속 심결

손해배상 판결

과실추정 130조

침해 - 정  
 - 유  
 보(권) [청구항1] vs 제3자  
 - 업

cfl) 무효사유 有 특허권 → 제한

$\frac{A}{\vdash} \text{ vs } A \rightarrow \text{침해} X$

$A \text{ vs } A \rightarrow \text{침해} O$

정정소급효  $\rightarrow$  변종 후 상급심

특무, 권학, 침해소송

침해죄

허가 등 존속무효 대상

5개

등록된 자

기간 예외

특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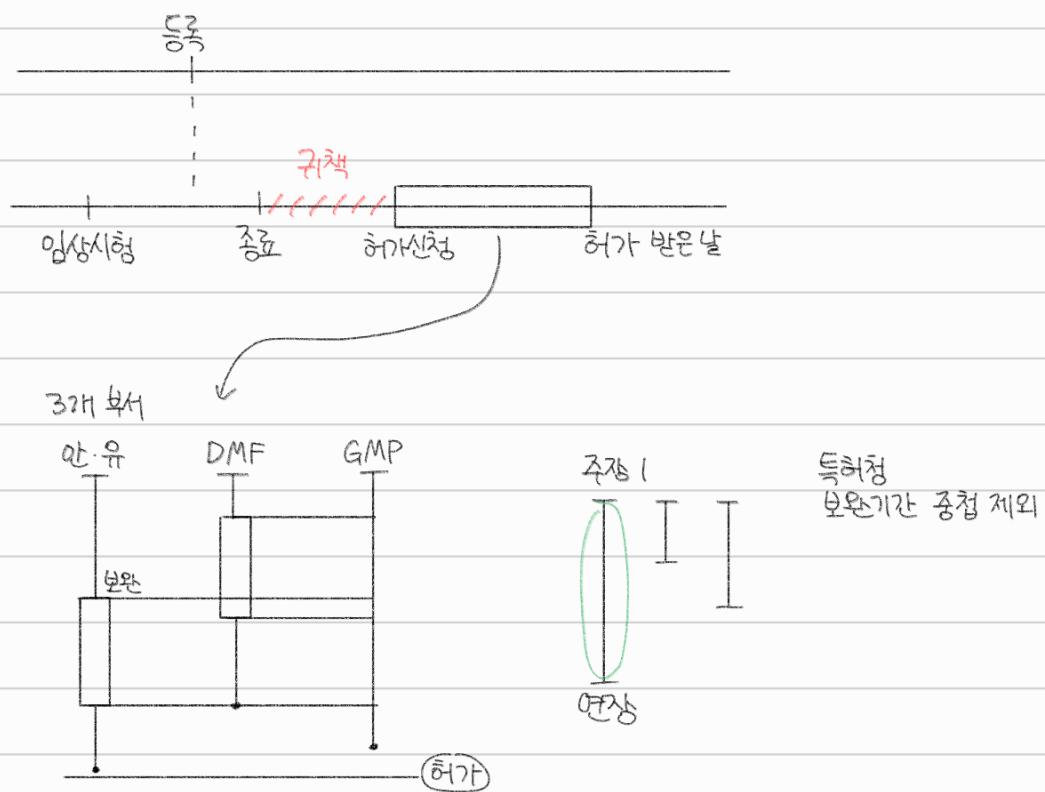
공유

~등록지연 3개



345<sub>p</sub> I

허가 등 면장기간 = '등록 후' 임상시험기간 + 허가서류 검토기간 - 허가신청인 귀책지연





355p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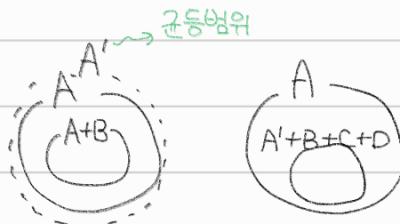
V

VIII

제3자 실시 -  $A' + B + C + D$

[청구항1] A

[청구항2] A+B



권학

· 대비可

획발 설·[도] - ①  $A' + B + C + D$  - 실시中

②  $A' + B$

- 대응

V ~ ③ A'

- 일부누락

④  $\textcircled{A} + B$

기능적 표현

구성	청구항 1	획발	대비
1	A	$A'$	(상이)

구성	청구항 1	획발	대비
1	A	$A'$	(상이)
2	B		?

균등

### 1. 획발 특정

### 2. 청구항 특정

### 3. 대비

### 4. 운언, 균등, 이용 일사부재리 (다른 구별可)

전용

↓  
권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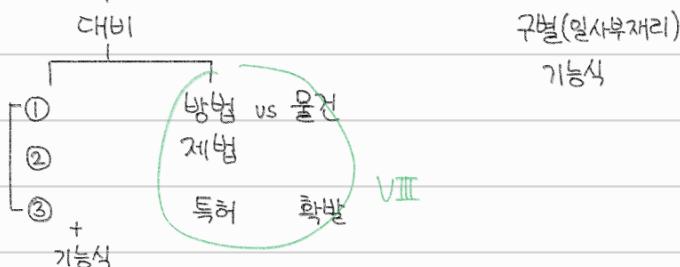
$A' + B + \dots$

기능적 표현

Ⅲ

획발 (특정) → 보정명령 → 요지변경 X 보정可 → 각하심결

(判)



IV, V, VI

C) [청구항1] 제3자

$A + B + C$      $A + B + C$     운언

$A' + B + C$     균등

$A + B + C + D$     이용  
 $A' + B + C + D$

$B + C$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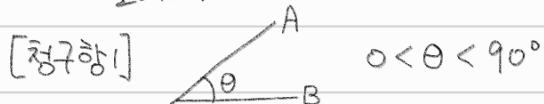
I, VII

확발 설명서 [도면] 명세서 [도면]

XIV

1. 명칭 물건
2. 구성 물건

3. 상세설명 청구범위 (Y방법)  
Y방법 사용을 위한 물건  
일 예로써



[확발] 설명서 A, B 평행  
도면



일치X ~> 설명서로 해석

XI

심판

특법

심판적법요건

(심판청구이익, 각하심결)

소적법요건

(소이익, 각하판결)

직권조사사항, 당사자의 주장 없더라도

본안

본안

직권탐지주의

당사자 주장 입증 + 직권

(당사자 주장 없더라도)

당사자 주장, 입증

변론주의

Step 1) 확발

step 2) 확발 + 실시, 준비 → 각하심결

step 3)  $\alpha$

X 제법

확발

$\alpha$

Y 제법

실시

[청구항1]  $\alpha$ 실

1. 명칭 실

2. 구성  $\alpha$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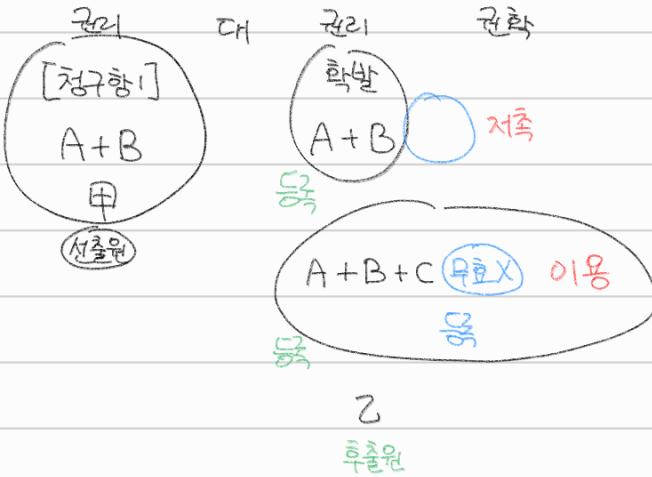
3. 상세설명 X 제법 제조

371p 50 I

III

심판적법요건

(d) 권한 배분 [특허무효심판]  
[권학]



乙

후출원

저촉 저촉 권학

기고인 피기고인

특전 → 이  
甲 乙

각하심결

소극 권학

이  
乙 特  
甲

본안심결 → 기각

본안심결 → 속한다.

" → 기각

375p 51

I~IV

• 균등요건

과제해결원리

vs 자유실시기술

효과

의식적제외

습기변경

history

Step 1)

제13자

[청구항]  $a_1 \text{ or } a_2 \text{ or } a_3 \rightarrow a_4$

[청구항] A ↳

Step 2)

제13자

[청구항1] 흑연심 + 목재외각부인 연필로서

흑연심 + 목재외각부 + 오각형 연필

목재 외각부가 육각형인 연필

[발설] 배경기술 흑연심 + 목재외각부 + 원형, 굴려간다(공지기술)

구성

(효과) 굴려가지 않는다(과제)

구성	청구항1	학발	대비
1	흑연심	흑연심	동
2	목재외각부	목재외각부	동
3	육각형	오각형	(차) → 실동X → 문언X → <u>근등</u>

• 과제해결원리

공지기술 vs 청구항1

명세서 기재

차이 → 기능

구성	청구항1	공지	대비
1	흑	흑	동
2	목	목	동
3	육	원	(차)

효과

↓  
△각형 → 과제해결원리

과제해결원리 → 다각형



• 효과 T 과제해결원리

↑ 과제해결원리

공지 - 흑 + 목 + 사

(명세서 기재X)

자유실시기술 포함시 → 변경 구성 개별효과 차이 고려

(신규, 진보X)

386p V

## 권리범위 속부 판단

1. 청구범위 해석 → [청구항1]  $A+B+C$  제3자  $A'+B+C$

2. 문언범위 → AER (구성요소원비) ↗ 구성요소 유기적 결합

3. 균등범위  
[ 과제해결원리 ]  
효과 신경작동의 → 유용성시기준  
[ 의식적제외 ]  
쉽게 변경 가능여부

4. 이용관계

VI

[청구항1]  $A+B+C$

X효과

제3자  $A+B+C+D \rightarrow$  문언, 균등, 이용X → 권속X

[ X효과 ]

$A+B+C+D \rightarrow$  이용 → 권속O  
X효과

$A'+B+C+D \rightarrow$  이용 → 권속O  
X효과

등록O 등록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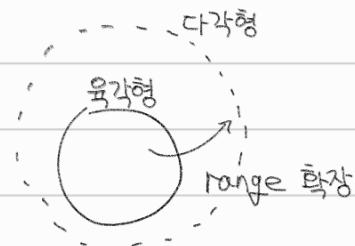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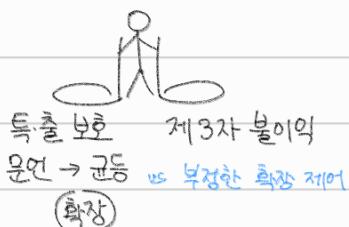
98 → 138 → 183 X

[청구항1]  $A+B+C$  제3자  $A+B+C \rightarrow$  문언범위

$A'+B+C \rightarrow$  실동 → 문언범위

$A'+B+C \rightarrow$  균등범위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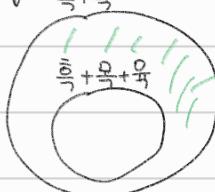
[청구항1] 흑+목 연필

↓ 거동 흑+목+원 연필

[ 보정/정정 ~ IX  
분할 ~ VIII ]

[청구항1] 흑+목+육 연필 → 청구범위 강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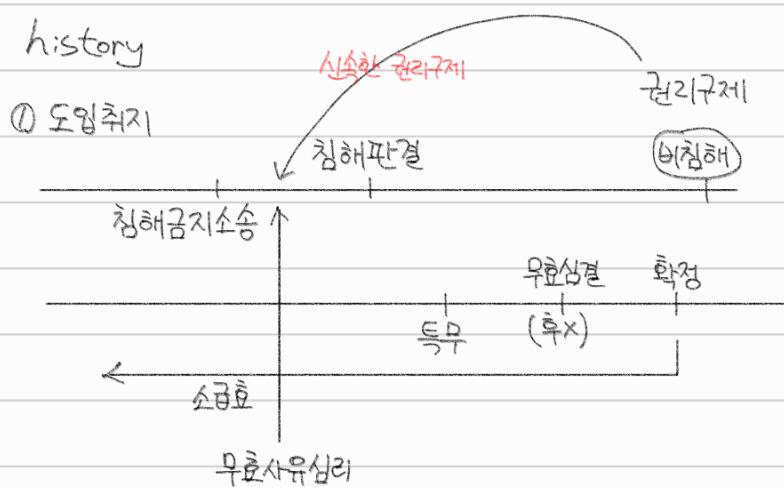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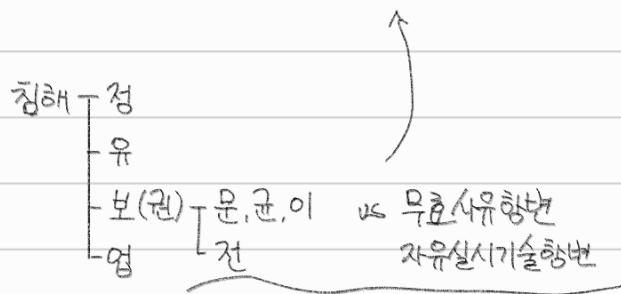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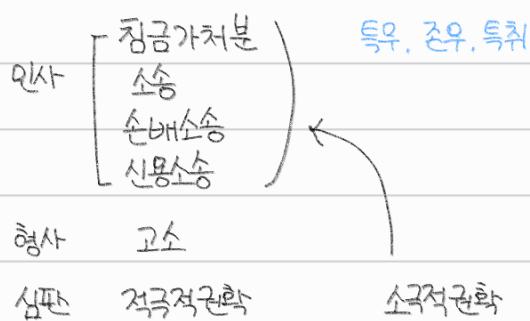
for 거절이유 극복 (의식적) 주관적 요소



395p 52

베타권자

제3자



② 권한배분

침해소송 → 무효사유심리 → 기각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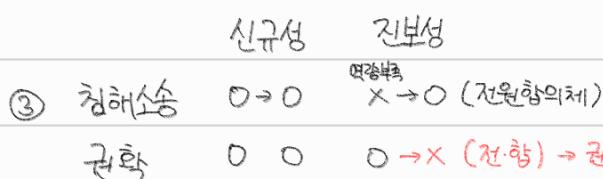
특허무효판결 (무효항변)

권학 → " → 권속 × 심결

특무 → " → 무효심결

권학 - 무효사유 - 권리범위 부정 - 권속 X  
권리남용

침해소송 - 무효사유 - 권리남용 - 비침해  
(권리범위부정)



④  $\neg 42\text{④}2), \neg 42\text{③}1)$  反  $\rightarrow$   $\neg$  기술적 범위 불특정  $\rightarrow$  권리 X  
 권리남용  $\rightarrow$  비침해  
 $\neg 42\text{④}1)$  反 - 제한해서 - 98p, 99p

412p 53 I, II

history

특허

[청구항1]  $A' + B + C$

제3자

$A+B+C$   
신규성 X (공지기술)

진보성 X

자유실시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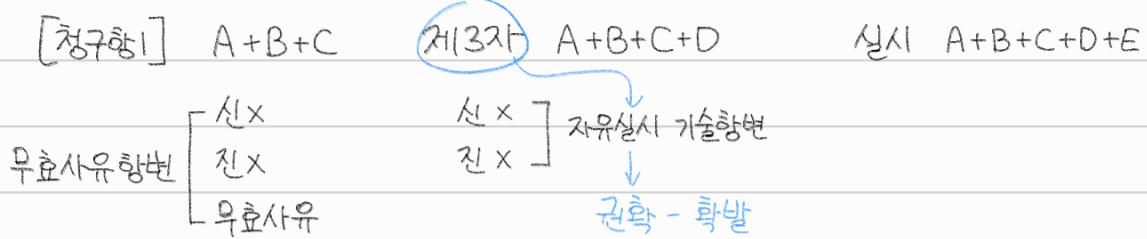
[청구항1]  $A+B+C \leftrightarrow A+B+C$

신규성 X 무효사유

진보성 X 무효사유

무효사유 항변

414p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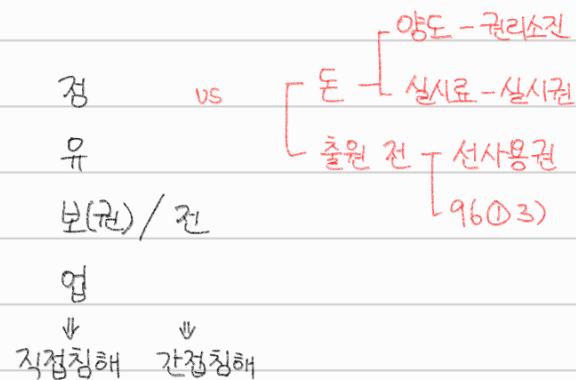
IV

제3자 (A) ~ A+B+C

간접침해? 신.진

실시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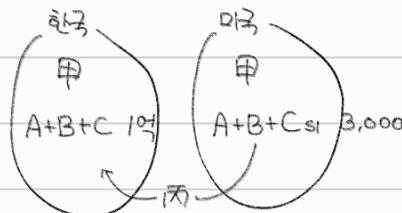
53-1



특허권 소유권  
특허권자 실시의 허락없이 사용·수익 처분 허  
    사용 판매 판매

[청구항] A+B+C vs A+B+C<sub>s1</sub> ← 적법한 권리자 양도 ← 권리소진

case 1) 진정상품 병행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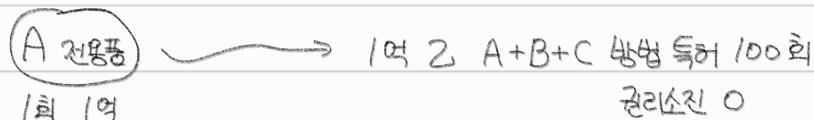


권리소진 O  
가격결정 甲이 결정

case 2) 甲 → 乙 → 丙

2,000 만원  
A+B+C<sub>s1</sub>  
1,000 만원 甲  
재판매 금지 조건  
권리소진 O

case 3) 甲 A+B+C 방법특허



특허 물건 → 물건 → 물건 권리소진  
 제법 → 제법 제조된 물건 → 제법 권리소진  
 방법 → 전용통 → 방법 권리소진  
 ↓  
 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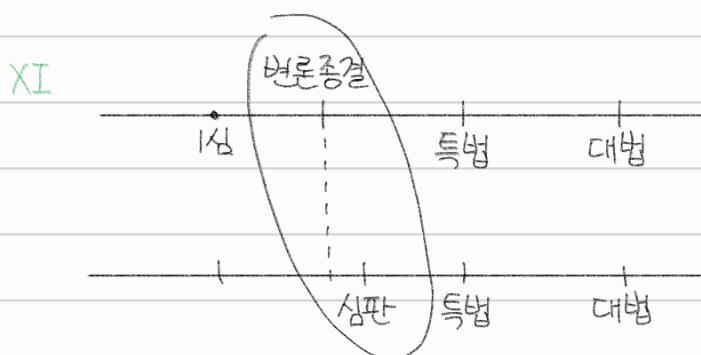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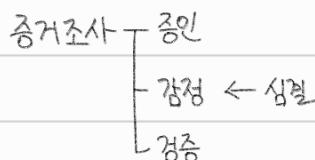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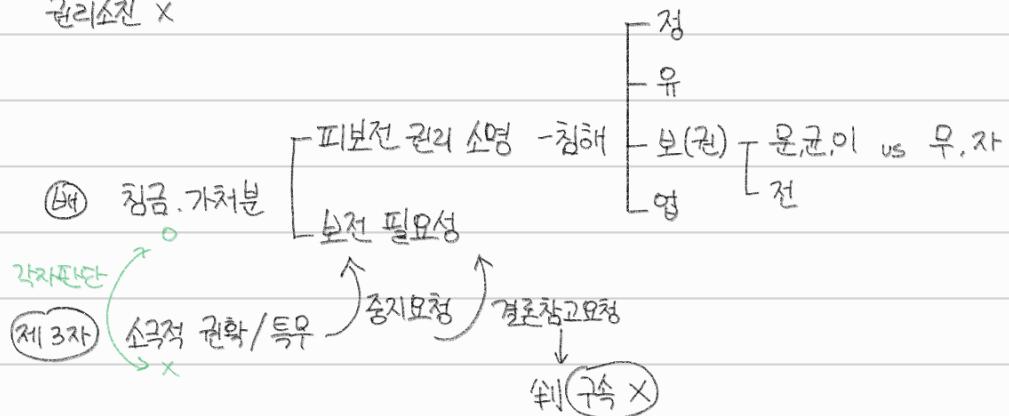
422p 54

권학 vs 침해소송

선사용권 X, 실시권 X

진보성 무효사유 X

권리소진 X



439p 55

공유 재산권 행사 - 사용, 수익 등의 要 - 미·실·질  
절차 - 출, 존출, 심판 - 고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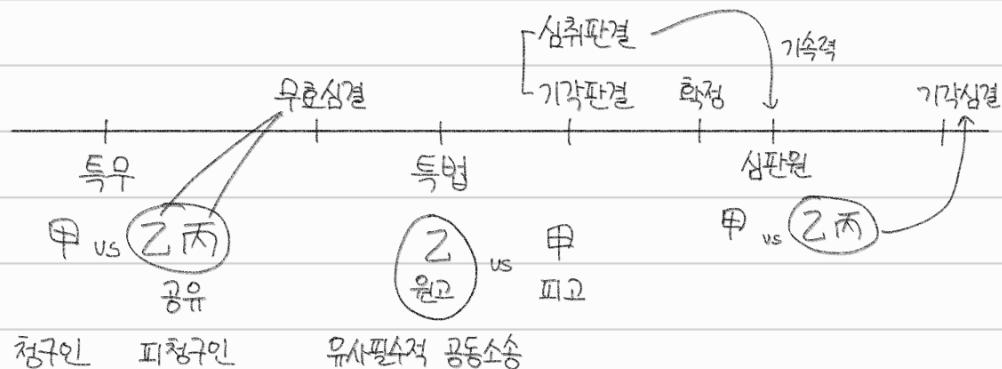
step 1) 공동소유 법적성격 - 공유

공유 vs 합유 vs 총유  
지분

step 2) 일반법 vs 특별법 - 특허 특별 취지反 x 범위에서  
취지 민법 공유 규정 적용 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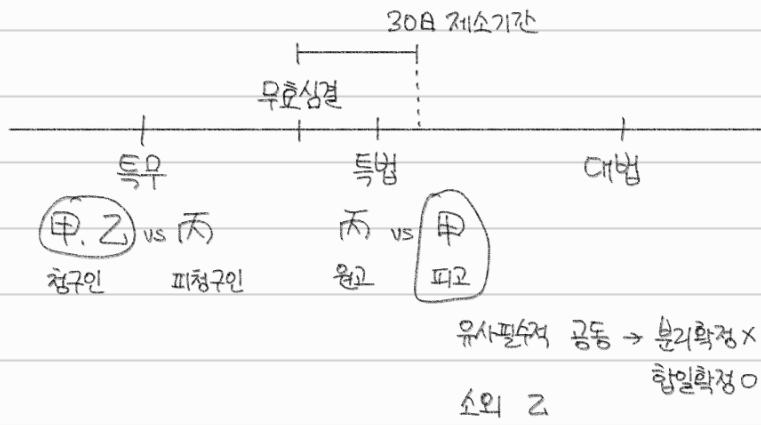
step 3) 99 , 139  
동의 심판 ⇌ 우채성  
타공유자 불이익 발생可 지분별 결론 不可

step 4) 공유물 분할청구 1人 소송  
불이익 발생 x 지분별 결론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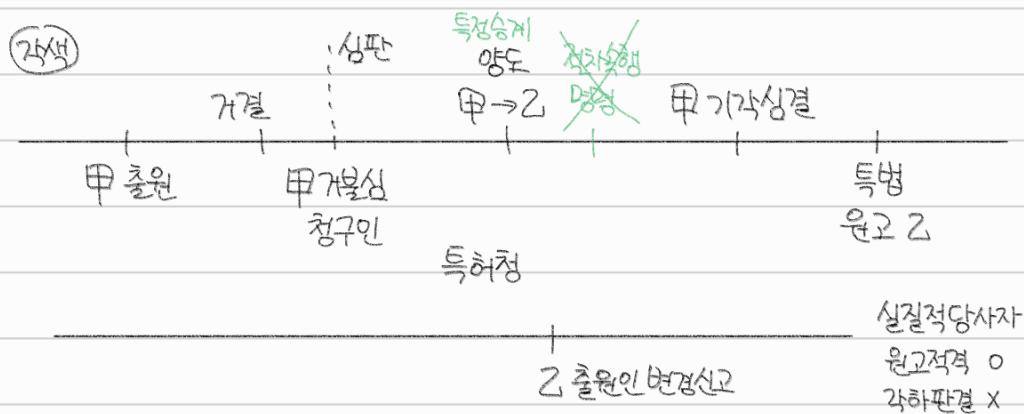


(cf) [ 통상공동      분리학정  
      필수적공동 ]  
      [ 고유필수      합일학정  
      유사필수 ]

III



V



30日



445p 56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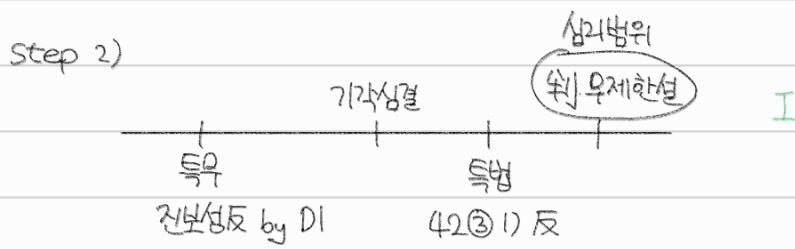
입의적 심판전치주의

step 1) 일반행정 → ↗ 심판 → 법원 → 대법원

법원 → 법원 → 대법원

특허 → 심판 → 법원 → 대법원

↳ 필수적 심판전치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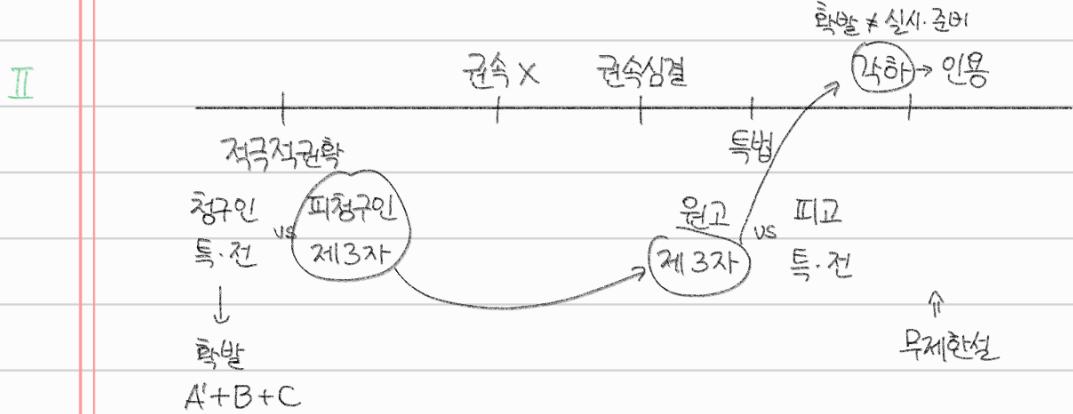
Step 3) 결정계

거부심 ) 예고통지  
정정  
특취      vs  
보정 정정 + 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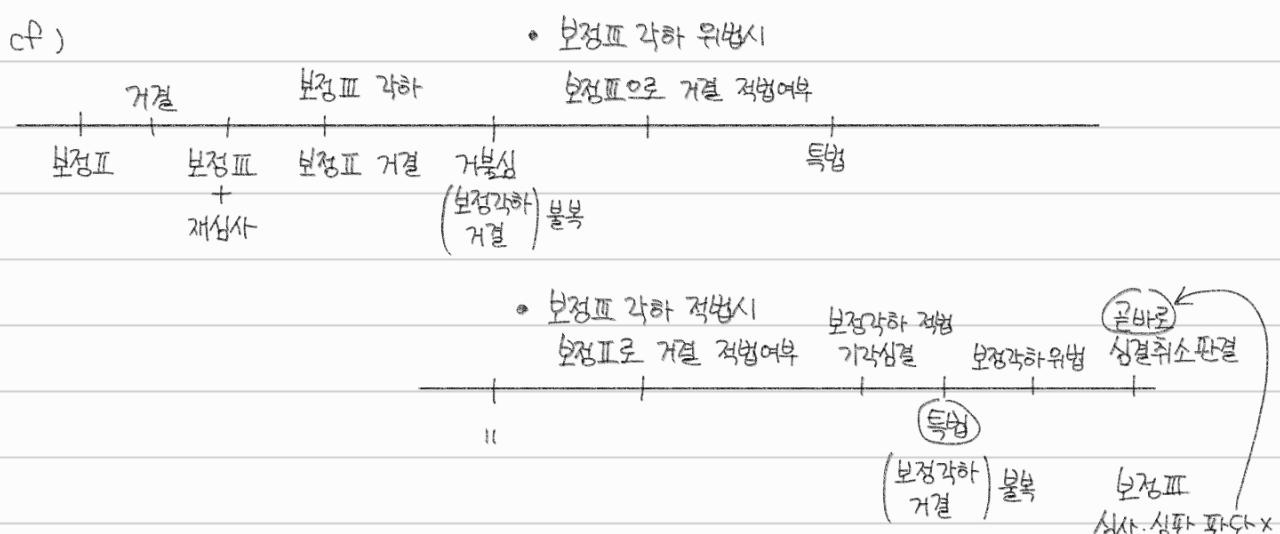
↓

새로운 사유 상사不可  
(주지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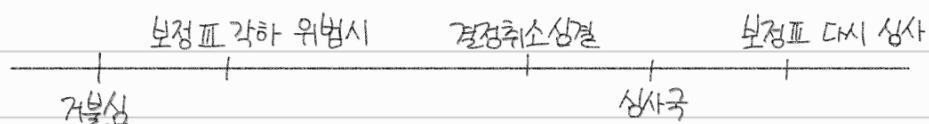
Step 4) 보정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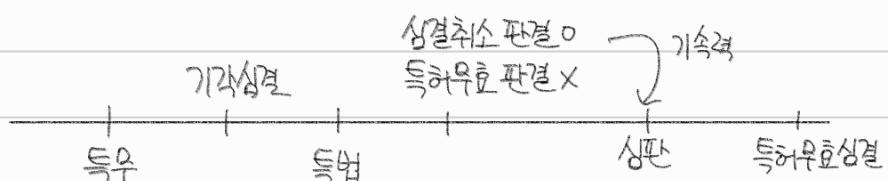
18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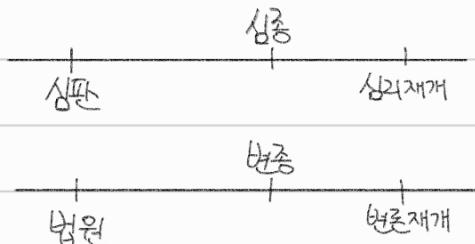
c)  
보정각하 단독불복제도의 경우



450p VIII, IX



X



XII, XIII

ex) 토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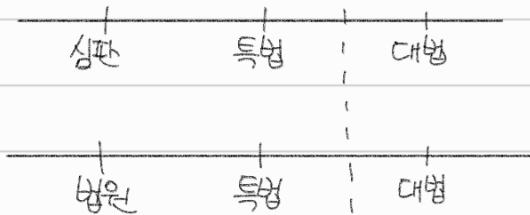
(심판)

법원

직방	직권조사	직권조사
본안	직권폐지	변론주의

사실심 : 법률심

사실관계 → 법적용 →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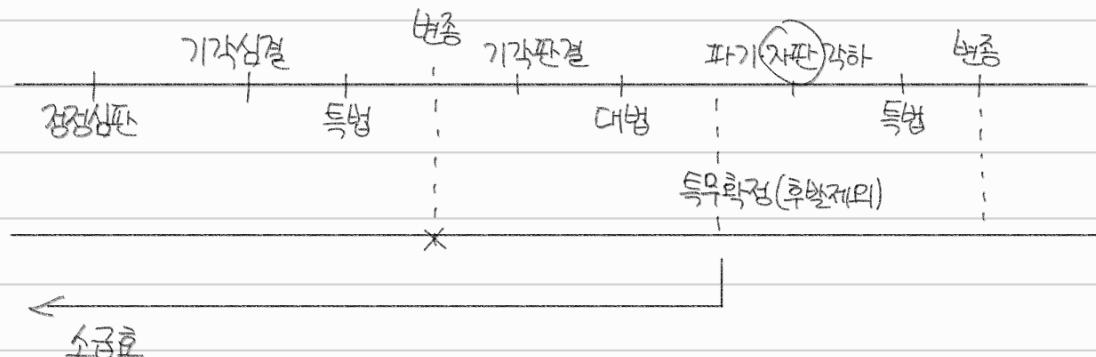


455p 57

심판청구이익 -

소 이익 - 심판청구이익 + 기존 심결 확정 불이익 여부

특무학정(소급효)  
권학(장래소멸)



461p II

행정부 | 사법부

(D)

심판

대법

심판청구서

특법

주장·증거

소장

상고장

주장·증거

사법부

법원

특법

대법

소장

상고장

소장

상고장

(주장·증거)

1항, 3-5항 정정허용  
기각심결

1항 정정요건 X  
정정 전 1항 무효  
취소판결 확정

3-5항 정정허용



469p 59

침해죄 - 침해 + 점

- 유  
- 보(권) - [청구항] vs 제3자  
- 업

특허등록



진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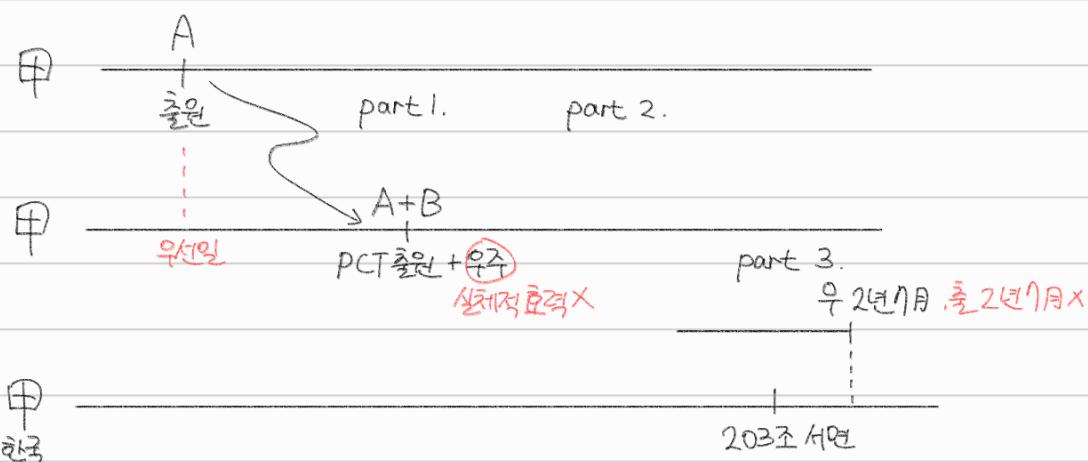
예측공간효과

특허등록

$$[\text{청구항}] A+B+C = A'+B+C$$

제조·판매

473p 60 I



국제단계 WIPO 주관

II

Part 1. Part 2.

수리관청 심사·공개

PCT 출원

Part 3. Part 4.

진입

특례

국내단계 한국 특허청 주관

PCT 19.34 보정

명백히 잘못된 기재·정정신청  
국어 → 외국어